

UN 강제실종협약 가입 방안 모색 전문가 세미나

일시 2019. 12. 12.(목), 15:00~17: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0층)

UN 강제실종협약 가입 방안 모색 전문가 세미나

일시 2019. 12. 12.(목), 15:00~17: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0층)

프로그램

일 시 2019. 12. 12.(목), 15:00 ~ 17:00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0층)
 주 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15:00~15:15	<p>인사말 : 조영호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p> <p>인사말 :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p> <p>초청연사 : 시나 폴슨 (UN OHCHR Seoul 대표) <국제사회의 유엔 강제실종협약 논의 현황과 대한민국의 가입 필요성></p>
15:15~17:00	<p>좌장 : 서창록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p> <p>발표 1 :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유엔 강제실종협약 가입 검토사항></p> <p>발표 2 : 김상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국제형사법적 시각에서 본 유엔 강제실종협약></p> <p>토론 : 신희석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p> <p>토론 : 조정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p> <p>토론 : 정호균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p> <p>토론 : 신유정 (법무부 인권정책과)</p>

목차

초청연사

국제사회의 유엔 강제실종협약 논의 현황과 대한민국의 가입 필요성

- 연설 시나 폴슨 (UN OHCHR Seoul 대표) 3

발표 1

유엔 강제실종협약 가입 검토사항

- 발표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9
- 참고자료 유엔 강제실종협약의 채택과 한국사회의 과제 (민주법학 제34호, 2007) 15

발표 2

국제형사법의 시각에서 본 유엔 강제실종협약

- 발표 김상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53

부록

- 부록 1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국/영문) 65
- 부록 2 유엔 강제실종협약 개요 및 가입 현황 107



초청연사

국제사회의 유엔 강제실종협약 논의 현황과 대한민국의 가입 필요성

시나 폴슨 (UN OHCHR Seoul 대표)

국제사회의 유엔 강제실종협약 논의 현황과 대한민국의 가입 필요성

먼저 오늘 강제실종협약 가입방안 모색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축하 인사를 전하며, 오늘 발언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하 “강제실종협약”) 비준을 고려하는 데 오늘 세미나가 긍정적으로 기여하길 바랍니다.

유엔 총회는 2006년 12월 20일 강제실종협약을 채택했습니다. 강제실종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으로, 이전에는 국제인권법에서 실질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실종 분야를 다룹니다. 이후 2010년 12월 23일을 기점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실종협약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남미 독재 정권 하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실종 건이 발생하고, 과거 발생한 수많은 실종 사례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날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강제실종협약에 대한 전세계적 요구가 있었던 것에 비해, 오늘날까지 해당 협약을 비준한 국가 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현재 강제실종협약 당사국은 62개국으로, 피지와 도미니카 공화국이 올해 가입했습니다. 당사국 수가 많지 않아, 전세계 실종을 방지하고 종식하려는 목적을 달성할만큼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제실종협약 내용을 보면 조사, 재송환금지, 인도 및 비밀 구금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아울러 강제실종협약 이행을 관장하는 전문가그룹인 강제실종위원회가 긴급 행동을 취하거나 질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강제실종협약은 어느 누구도 강제 실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합니다. 전시 상태나 전쟁의 위협, 혹은 국내 정치 불안정을 비롯한 국가 비상사태 등 어떤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강제 실종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강제실종협약은 강제 실종 예방, 처벌, 보상 및 재발 방지와 관련하여 국가가 법적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가가 강제 실종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국가가 강제 실종을 조사하고 소추하여, 과거 잘못을 시정하고 책임 규명을 강화하도록 강조합니다.

강제 실종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강제실종협약은 다음의 의무를 명시합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감독되는 장소에서만 사람을 구금하도록 하며, 해당 장소 내 수감자는 모

두 기록됩니다. 아울러 인신보호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며, 수감자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강제실종협약은 추방, 송환 또는 인도 조치로 인한 강제 실종의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보호하여 추가적인 피해자 발생을 막도록 합니다.

강제실종협약은 실종자의 상황 및 생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가족이 진실을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또한 부모가 강제 실종 피해자인 자녀가 불법으로 이송되는 사례, 이들 아동 신원의 위조 문제, 또한 입양하는 문제도 다룹니다.

강제실종위원회는 강제실종협약에 의거하여 당사국의 협약 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강제실종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정기보고를 받고, 개인으로부터 진정을 받는 형태로 이행 실태를 점검합니다. 강제실종위원회는 당사국에서 강제 실종이 광범위하게, 또는 조직적으로 발생했다고 불만한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 해당 당사국에 정보를 요청한 후에, 유엔 총회에 해당 건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강제 실종은 특정 건의 경우 반인도 범죄로 볼 수 있으며, 국내 혹은 국제 형사 사법 제도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소추될 수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강제실종협약을 비준하여 역내 및 국제적으로 인권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역할과 의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강제실종협약 비준은 강제 실종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다시 한 번 국가 차원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며, 더욱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주제별, 혹은 국가별 위임권한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논의를 이어가고 설명을 제공하는 등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CPPED Current statu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regards to the accession to the ICPPED, and the need for South Korea to ratify the Convention

First, let me congratulat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for holding this seminar, and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address you here today. I very much hope that this seminar will contribute towards consideration of South Korea's ra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The Convention was adopted on 20 December 2006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t is a legally binding instrument against the disappearance of persons – an area which was previously not adequately cover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Convention entered into force on 23 December 2010.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has its roots in the efforts to address violations by Latin American dictatorships in the 1970s and the 1980s. It remains just as relevant today, as disappearances continue to take place in all regions of the world, and as countless past cases have not yet been resolved. In spite of this global appeal, the Convention has not yet attracted the number of ratifications which it merits. To date, it has 62 states parties, with Fiji and Dominica joining this year. But in the absence of a higher number of states parties, the treaty lacks the broad-based support it requires to fully meet the objective of preventing and eliminating disappearance globally.

In terms of content, the Convention contains provisions on investigations, non-refoulement, extradition, and secret detention. It further allows for urgent action and inquiries by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a group of experts which oversees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e Convention outlines that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enforced disappearance. No exceptional circumstances whatsoever, whether a state of war or a threat of war, internal political instability or any other public emergency, can be invoked as a justification for enforced disappearance.

The Convention further provides states with a basis for establishing a solid legal frame

work in the areas of prevention, punishment, reparation and non-recurrence of enforced disappearances. It also provides for states to protect disappeared persons and their relatives. It focuses on redressing past wrongs and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by requiring states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enforced disappearances.

Obligations of a preventive nature, include the obligation to detain persons only in officially approved and monitored institutions in which all prisoners are registered. It provides for the absolute right to Habeas corpus, as well as the right to receive information on prisoners. The Convention aims to prevent victimization by extending protections to those in danger of enforced disappearance arising from expulsion, surrender and extradition

The Convention recognizes the right of victims and their families to know the truth regarding the circumstances and fate of the disappeared person. It also addresses the unlawful removal of children whose parents were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 as well as the faking of these children's identities and their adoption.

The Convention provides for monitoring of implementation by state parties through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It does so through regular reporting, and through receiving individual complaints. Furthermore, if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receives information which credibly indicates that enforced disappearance is being practised on a widespread or systematic basis in a state party, it may, after seeking information from the concerned state, bring the matter to the attention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In certain cases enforced disappearance can also be considered as a crime against humanity and may result in international prosecution through national or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mechanisms.

Ladies and gentlemen,

South Korea now has an opportunity to reinforce its role and commitment as a leader of human rights in the region and globally, by ratify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More importantly, perhaps, it has the opportunity to show this commitment to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 and their families.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with its thematic and country coverage, stand ready to assist in any areas that may need further discussion or clarification.

I look forward to our constructive discussions today. Thank you.



발표 1

유엔 강제실종협약 가입 검토사항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유엔 강제실종협약 가입 검토사항

I. 협약 관련 사항

- 2006년 12월 20일 유엔 총회 제61차 회기에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이 결의 제61/177호로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 협약문은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2716, p. 3에 수록.¹⁾
- 2007년 2월 프랑스정부의 초청으로 유엔 강제실종협약에 대한 서명식이 있었음.
- 2010년 12월 23일 협약 발효(그 해 11월 23일 이라크가 20번째 국가로 가입하여 협약 제39조 1항에 따름).
- 2011년 5월 31일 협약 제26조에 따라 당사국회의에서 10명의 독립전문가들로 초대 강제실종위원회(CED, 이하 ‘위원회’로 약칭함) 위원이 선출되었고 같은 해 7월 1일자로 임무가 개시됨. 당사국회의는 현재까지 한 차례 열림.
- 2011년 11월 8일~11일 위원회 제1차 회기²⁾에서 ‘조약기구’(treaty body)로서 공식 활동을 개시된 이래 현재 17차 회기까지 열림. 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ohchr.org/E/N/HRBodies/CED/Pages/CEDIndex.aspx> 참조.

*현 강제실종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 이름	국적	임기 종료일
Mr. Mohammed AYAT(Chair)	Morocco	30 June 2021
Mr. Moncef BAATI	Tunisia	30 June 2021
Mr. Olivier de FROUVILLE (Vice President)	France	30 June 2023
Ms. Milica KOLAKOVIC – BOJOVIC (Vice President)	Serbia	30 June 2021
Ms. Barbara LOCHBIHLER	Germany	30 June 2023
Mr. Juan José LOPEZ ORTEGA	Spain	30 June 2023
Mr. Horacio RAVENNA(Vice President)	Argentina	30 June 2021
Mr. Koj TERAYA (Rapporteur)	Japan	30 June 2021
Mr. Cheikh Ahmed Tidiane COULIBALY	Senegal	30 June 2023
Ms. Carmen Rosa VILLA QUINTANA	Peru	30 June 2023

1) 채택 경위와 협약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는 조시현, 유엔 강제실종협약의 채택과 한국사회의 과제, 『민주법학』, 통권 제34호, 2007, 230쪽;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Fact Sheet No. 6/Rev.3 참조.

2) REPORT OF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ON ITS FIRST SESSION.

당사국 현황

- 2019년 10월 현재 98개국이 서명하였고, 50개국이 비준하고 12개국이 가입하여 62개국이 협약당사국임(협약 제38조 참조).³⁾
- 협약 제31조는 당사국이 비준 시나 그 이후에 강제실종위원회의 개인통보절차를 별도로 수락하는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락을 한 당사국은 2019년 8월 현재 19개국임.
- 협약 제33조는 협약의 심각한 위반의 경우 당사국을 방문할 수 있는 이른바 ‘조사절차 (inquiry procedure)’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에 위원회의 방문 권한을 수락한 당사국은 2019년 8월 현재 51개국임. 제31조와 제33조는 이른바 ‘선택적 메커니즘’ (optional mechanisms)라고도 함.

한국정부는 인권이사회에서의 발언을 통해 2007년 9월 중으로 서명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서명하지 않았고 비준이나 가입을 하지 않고 있음.

- ※ 향후 비준과 동시에 협약 제31조와 제33조 절차를 수락할지 여부를 같이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특히 일본과 달리 한국은 유엔인권기구의 개인통보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왔다는 점에서 강제실종협약의 경우 특별히 다른 입장을 취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됨.

기타 협약당사국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불참.
-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도 저조한데 일본(2007.2.6.서명, 2009.7.23.비준), 이라크, 캄보디아, 스리랑카 외에 가입국 없음.
- 일본은 납치문제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고 서울의 유엔인권사무소장은 북한의 가입을 촉구하고 있음. 북한은 과거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반박함.
- 다른 유엔의 인권협약들에 대한 가입현황과 비교하여 아직 저조하다고 할 수 있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위원회를 포함하여 국제NGO들의 가입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음.

3)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IND&mtdsg_no=IV-16&chapter=4&clang=_en

해석선언과 유보

국제조약법에서 비준 또는 가입국들은 해당 조약에 해석이나 유보에 관한 선언을 할 수 있음. 강제실종협약의 경우에도 많은 선언들이 이루어졌음.⁴⁾

※ 한국의 비준에 앞서 이러한 선언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특히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 중이면서 협약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이 타당한 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⁵⁾

II. 강제실종위원회 활동 관련 사항

현재 위원회는 제네바에서 매년 두 차례 회기로 열림. 국가보고서의 심의와 개인통보 심사를 정례적으로 진행하여 결론적 의견(concluding observations)이나 권고를 내고 있음. 이외에도 긴급행동과 현지 방문 등의 활동을 함.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협약 이행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협약의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

in its rules of procedures (CED/C/1) and its guidelines on the form and content of reports (CED/C/2), the rules of procedure (CED/C/1) adopted during its second session, in March 2012,

위원회는 협약 규정의 해석에 관련하여 특히 ‘실체적 성명’(substantive statements)의 형식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성명이나 결정들은 아래와 같음.

4)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IND&mtdsg_no=IV-16&chapter=4&clang=_en; 또한 UN Doc. A/C.3/61/SR.45; GA/SHR/3872, Nov. 13, 2006 참조.

5) “미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던 유보입장을 유지하였는데 강제실종의 정의규정이 명확하게 고의를 요건으로 할 것, 제32조의 진실에 대한 권리의 부정, 연방체제상 강제실종을 독자범죄로 하기 어려움, 국제인도주의법과의 관계, 자유권위원회를 협약감시기구로 할 것,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모호성,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한 것을 항변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금지되었는지 알지 못한 행위를 한 정부직원을 기소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연방차원에서 시효에 관한 규정을 이행하기 어려움, 불송환에 관한 규정이 국제법원칙과 일치하지 않음, 구금시절에 관한 기준과 접근 문제가 국내법과 일치하지 않음, 제18조의 구금에 관한 정보제공 규정이 국내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합리적이지 않은 기준을 설정함,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아동의 정의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조시현, 앞의 글, 246쪽.

1. 2012.11.7. 실제적 성명: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유엔 인권조약기구 시스템 보고서 수락
2. 2012.11.7. 절차에 관한 결정: 인권조약기구 구성원의 독립성과 공명정대에 관한 기준(아디스 아바바 기준) 수용
3. (날짜 미상) 실제적 성명: 당사국 보고서 심의의 시간적 요건
4. 2016.2.13. 실제적 성명: 군사재판 배제
5. 2018.6.1. 성명: 국제법위원회의 인도에 반한 범죄 초안규정에서 피해자 권리가 후퇴한 점에 관해 유감 표명

비준문제와 관련하여 비준 촉구 외에 위원회가 특별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지금까지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위원회의 협약 규정 해석에 관한 입장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협약상의 강제실종위원회 이외에 특히 1980년부터 현재까지 활동을 벌이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의 “강제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the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의 작업도 참고하여야 함(현재 백태웅교수 한국위원으로 활동 중). 이러한 검토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2007년 토론회와 2012년의 “UN 강제실종협약의 가입을 위한 국내법적 절차 검토 최종보고서”(김영석교수) 등을 통해 수행된 바 있음.

이러한 검토들을 통하여 비준시 유의사항을 간접적으로 도출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협약의 기준은 다른 인권협약에서처럼 꾸준히 발전하는 것이라는 점, 이러한 검토는 협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이행을 실효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며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비준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지는 의문임. 다시 말해 이를 전제로 비준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됨.

Ⅲ. 협약 가입 논의의 경과와 과거사문제와의 관련성

협약이 채택된 다음 2007년 노무현정부 이래 협약 가입이 10년 넘게 성사되지 못하고 있음.문재인정부의 과거사 관련 정책 역시 담보상태를 면하지 못함.

세미나 안내문에 정리된 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차례 비준을 권고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있는 상태임.

외교부와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입 권고를 수용한 다음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한국에서 강제실종에 해당하는 사례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위안부’문제⁶⁾를 포함한 강제동원 문제, 납북문제, 의문사문제 등 과거 인권침해사건들을 들 수 있고 형제복지원이 나 선감학원 문제도 있음. 그럼에도 강제실종 개념 자체나 강제실종협약 가입문제는 현안이 되지 못한 이슈로서 피해자들의 요구를 수렴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강제실종협약은 강제실종위원회의 표현에 따르면 ‘법적 이정표’로서 그 동안 중대한 인권침해사건들에 대한 유엔의 해법을 망라하고 있음. 주요한 측면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1. 강제실종 자체의 범죄화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중요한 유형임을 확인함
2. 체포, 구금 절차 정비
3. 진실을 알 권리,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피해자들의 권리의 강화(피해자중심주의)
4. 부검, 유해·유골 관련 기준 마련

여기에서 한국의 현행법과 협약의 주요 내용을 비교 검토하지는 못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민사와 형사제도의 발전에 있어서도 강제실종협약 가입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됨. 더욱이 국제인권법상 강제실종을 당하지 않을 권리는 어느 때에나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인데도 비준이 지연되어 국내적 효력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임.

과거사문제와의 관련

강제실종이란 말은 한국사회에서 아직 낯선 것 같지만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정권의 안위를 위해 궁극적으로 살해에 이른 과정을 중시하고 유가족의 권리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이해하면 이 말이 담으려고 한 현실은 한국의 맥락에서는 이른바 과거사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뚜렷해짐.

그 동안의 과거사 정리사업은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위원회들이 설치되거나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하여 포괄적 청산이 도모되었으나 활동을 종료한 상황임.

과거사문제의 성격을 볼 때 기존 위원회들의 단기적인 활동으로 해결된다고 할 수 없고

6) 박배근,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본 일본군‘위안부’ 피해 구제: 2006년 ‘국제연합 피해자권리 기본원칙과 지침’을 중심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법적 책임: 전시 성폭력 실태기록, 학술행사 홍보 및 국제협력활동 사업 최종 보고서』, 여성가족부, 2018; 조시현,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과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 김부자 외,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2009, 49면.

유사한 문제들이 제기될 때마다 특별법 제정 등 지난한 과정을 겪은 끝에 국가의 관련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 진실규명이나 피해회복, 재발방지 등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과거사 문제를 전담하는 상설적인 기구가 요청되어왔음. 진실과 피해구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한 것으로 시기에 관계없이 실현하여야 할 것임.

강제실종문제를 전담할 위원회의 설치는 협약이 부과하는 의무는 아니지만 강제실종협약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기준⁷⁾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제실종을 포함한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법률을 강제실종협약의 국내이행법률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해보는 것은 어떤가함.

이러한 법률을 통해 위원회(일종의 진실화해위원회가 될 것임)를 설치하고 그 동안 산 일된 각종 위원회들의 활동과 성과를 계승하고 국제사회와 공유하며 승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과거사 관련 성과들을 법과 제도로서 정비하고 국제법과 국내법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의미가 있음.

물론 강제실종협약 가입은 과거사를 정리하는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님. 과거사 피해자들이 현재에도 가지는 진실, 정의, 피해회복, 재발방지에 관한 권리들을 지속적으로 실현시켜나감과 동시에 향후 강제실종 범죄를 방지하여 인권보장체제를 강화하는 의미를 가짐(끝).

7) 이주영·백법석, 국제인권법상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자 중심적 접근(victim-centered approach), 『국제법학회논총』, 제63권 제1호 (2018), 188면.

[일반]

유엔 강제실종협약의 채택과 한국사회의 과제* **

조시현

건국대 교수, 국제법

shcho@konkuk.ac.kr

<국문요약>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은 강제실종의 처벌과 방지를 두 축으로 이에 관한 인권기준과 보호절차를 마련한다. 국가가 사람을 체포, 구금한 다음 이를 인정하길 거부하거나 행방을 감추어 법의 보호 바깥에 놓을 경우 인정되는 강제실종은 인도에 반한 범죄로서 과거 군사정권의 전유물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에도 테러와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강제실종협약은 무엇보다 강제실종을 하지 않을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하여 실종조사, 책임자 처벌과 구금에 관한 기록 유지를 요구한다. 협약은 또한 진실을 알 권리를 비롯하여 강제실종 피해자들의 정보요구권과 배상의 권리를 인정한다. 협약의 이러한 성과는 모든 국제·국내 인권기구에 의해 공유되어야 하며, 한국은 조속히 이를 비준하고 처벌법규를 포함한 협약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협약발효 이전의 사건에 대하여도 협약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주제어: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강제실종, 국제인권법, 과거청산, 테러와의 전쟁, 국내이행

* 심사위원: 김종서, 백좌흠, 임태근

** 이 논문은 2006년도 건국대학교 신입교원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이 글은 2007년 4월 27일 (사) 유엔인권정책센터의 월례 인권포럼과 같은 해 7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유엔 강제실종협약 관련 쟁점에 관한 세미나’에서 발제한 글들을 보완한 것이다.

< 차 례 >

I. 들어가며 II. 강제실종과 국제인권기준 III. 유엔 강제실종협약 채택의 경과 IV. 유엔 강제실종협약의 주요 내용 V. 맺으며
--

I. 들어가며

2006년 12월 20일 유엔 총회 제61차 회기에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이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되었다.¹⁾ 이 새로운 국제인권협약은 그 동안의 유엔 인권 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대체하여 2006년 6월 새로 출범한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가 연 첫 회기, 첫 번째 결의로 채택한 협약안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서의 의미도 있다.

2007년 2월 프랑스정부의 초청으로 유엔 강제실종협약에 대한 서명식이 있었고, 현재 50여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국정부는 인권이사회에서 의 발언을 통해 오는 9월 중 서명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처음부터 협약안 지지국의 대열에 동참하였으면서도 2월에 다른 국가들과 같이 서명하지 않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협약의 효력발생에는 20개국의 비준이나 가입이 필요한데(협약 제39조), 협약에 대한 이례적으로 높은 관심으로 올해 안으로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강제실종’(enforced disappearance)은 국가기관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되었지만 국가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길 거부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운명이나 행방을 감추어 법적 보호밖에 놓이게 될 경우 인정된다(협약

¹⁾ 결의 제61/177호.

제2조). 강제실종이 가리키는 인권유린행위는 오랫동안 국가폭력의 주요한 수단이었다. 독일 제3제국의 히틀러는 ‘밤안개 정책’(Night and Fog policy)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방편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²⁾ 강제실종 또는 ‘비자발적(involuntary) 실종’이라는 말은 1960년대 과테말라에서 반체제인사들이 납치되어 두 번 다시 소식을 알 수 없었던 시절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³⁾ 이 말은 실종사건이 불법, 비밀 체포와 구금 중의 고문과 말로 할 수 없는 인권유린 끝에 흔히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완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⁴⁾ 이 용어는 그 후 1970-80년대 칠레와 아르헨티나 등 남미국가들이 자행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민주화에 따른 과거청산 노력이 기울여지면서 정착되어 마침내 협약의 채택으로 이어졌다.

강제실종은 그러나 과거의 유산에 그치지 않으며 지역적으로 라틴아메리카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1980년과 2006년 사이에 구미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5만 건이 넘는 강제실종사건이 유엔에 진정되었다.⁵⁾ 강제실종은 군사정권이나 권위주의체제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각종 무력충돌 중에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테러와의 전쟁’중 인권침해 문제의 하나로 지적된다.⁶⁾ 또한 일제하 강제동

2) Terence S. Coonan, “Legal and Theological Reflections on the Task of Making Former Torturers Accountable”,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제20권, 1996, 512, 517쪽 각주 16.

3) Juan E. Mendez and Jose Miguel Vivanco, “Disappearances and the Inter-American Court: Reflections on a Litigation Experience”, *Hamline Law Review*, 제13권, 1990, 507, 510쪽.

4) 위의 글.

5)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UN Doc. A/HRC/4/41, 25 Jan. 2007, Annex II, 104쪽(이하 유엔 문서는 지면관계로 번호만 표기한다). 모든 강제실종 사건이 유엔에 진정되는 것은 물론 아니므로 실제 사건의 수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다.

6) 예컨대 글쓴이,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 유엔 인권위원회 「관타나모 보고서」 읽기」, 『인권평론』, 창간호, 2006, 237쪽; David Weissbrodt and Amy Bergquist, “Extraordinary Rendition: A Human Rights Analysis”, *Harvard Human Rights Journal*, 제19권, 2006, 123, 160쪽.

원과 성노예와 같은 과거사문제와 일본인 납치문제를 둘러싸고 유엔 총회에서 협약이 채택된 날 벌어진 북한과 일본 사이의 공방전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맥락에서 강제실종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⁷⁾ 2006년 유엔 강제실종협약의 채택은 범세계적인 과거청산 노력의 결산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한편 강제실종이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현재형임에 따라 진전된 인권기준과 방지장치를 담았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 글에서는 강제실종협약의 채택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하여 먼저 강제실종에 대한 일반적인 국제인권기준을 살펴본 다음 강제실종협약 채택의 과정과 주요 내용의 검토를 통하여 협약의 인권기준과 이행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II. 강제실종과 국제인권기준

강제실종 사건은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생명권, 신체의 자유, 인신보호와 구금에 관한 기본적 권리,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으로 형사범죄를 구성하기도 한다.⁸⁾ 강제실종은 또한 한국에서 문제되는 ‘의문사’와 같이 종종 자의적 살해(arbitrary killing)와 약식 처형(summary execution)이라고도 부르는 실종자의 살해로 이어졌다. 이러한 강제실종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강제실종은 주로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이자 국가테러리즘의 성격을 가지므로 책임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남미국가들의 민주화과정 속에 진행된 과거청산을 위한 노력 가운데 강제실종 문제는

7) A/61/PV/82, 6-10쪽. 한국전쟁 이래 북한에 의한 남한, 북한, 일본 주민의 납치가 국제법상 강제실종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는 Grace M. Kang, “A Case for the Prosecution of Kim Jong Il for Crimes against Humanity, Genocide, and War Crimes”, *Columbia Human Rights Law Review*, 제38권, 2006, 51쪽.

8) 예컨대 한국헌법, 제10조, 11조, 12조, 13조 3항, 14조, 16조, 27조, 28조, 29조, 30조, 37조 등, 한국형법 제124조, 125조, 155조, 163조, 250조, 257조, 276조, 283조, 287조, 297조, 319조 등.

각종 위원회의 활동과 재판의 핵심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⁹⁾

강제실종에 대한 국내적 대처가 어려움에 따라 국제적인 인권옹호책도 강구되어 강제실종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¹⁰⁾을 비롯한 그 동안의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 국제인권보장체제에 의한 일정한 대응이 이루어졌다.¹¹⁾ 그러나 강제실종은 개별적인 인권침해를 넘어 그 자체 하나의 인권침해 유형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1980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최초의 주제별 인권보호장치로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이하 ‘강제실종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활동에 나섰다.¹²⁾ ‘비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¹³⁾과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¹⁴⁾ 등의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강제실종이나 처형에

9) 예컨대 Nunca Más, *Report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Disappearance of Persons*, 1984; Neil J. Kritz 엮음, *Transitional Justice*, 제3권,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1995 참조

10) 조약 제1007호(1976.3.23 효력발생; 1990.7.10 한국에 대하여 발효).

11) Nigel S. Rodley, *The Treatment of Prisoners under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제2판, 2000, 255-64쪽. 유엔 인권이사회(자유권위원회)의 취급에 대하여는 Dominic McGoldrick, *The Human Rights Committee*, Clarendon Press, 1994, 331쪽 참조. 강제실종사건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태도에 대하여는 Gobind Singh Sethi,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Jurisprudence on Issues of Forced Disappearances”, *Human Rights Brief*, 제8권 제3호, 2001, 23쪽 참조. 보다 상세한 기준으로는 법집행관 행동강령, 미결구금에 관한 기본원칙,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 등이 있다(이상은 박찬운·김선수 외, 『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행형』, 역사비평사, 1993, 111쪽이하에 번역됨). 또한 범죄와 권력남용피해자를 위한 정의의 기본원칙선언(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유엔 총회 결의 제40/34호, 1985.11.29) 참조

12) 결의 제20(XXXVI)호(1980).

13)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제1982/35호

14)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제1991/42호, 제1997/50호

관한 사건들은 또한 유엔 인권위원회가 국가별절차에 따라 파견한 특별 보고관이나 특별대표에 의해 다루어지기도 한다.¹⁵⁾ 더욱이 엘살바도르에서는 유엔주도의 진실위원회가 구성되어 장기간 내전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를 다룬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¹⁶⁾ 1999년에는 인권소위원회가 토고에서의 조사법적 처형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국제조사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의 설립을 촉구하였고 토고정부는 이를 수락하였다.¹⁷⁾ 오늘날 이러한 국제진실위원회 방식의 사용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진상규명을 위해 아예 상설 국제진실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나와있다.¹⁸⁾

강제실종문제에 대한 국제기준도 정립되기 시작하였는데, 1988년 미주 인권재판소는 온두라스 사건이라고도 알려진 Velásquez 사건에서 강제실종이 국제법상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처음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인권보장의무를 확인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하였다.¹⁹⁾ 1992년에는 유엔 총회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선언’(이하 ‘강제실종선언’)을 채택하였다.²⁰⁾ 1994년 미주기구(OAS)는 이 문제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인 ‘사람들의 강제실종에 관한 미주간 협약’을 채택하고, 미주 인권위원회와 인권법원이 제소와 통고를 다루도록 하였다.²¹⁾ 더욱이 1990년대 탈냉전으로 인한 내전을 비롯한 각종 국제분쟁

15) 예컨대 E/CN.4/1979/36.

16) S/25500, Annexes, 1993. 또한 Thomas Buergenthal, “The United Nations Truth Commission for El Salvador”,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제27권, 1994, 497쪽 참조.

17)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ogo, Statement by the Chairperson of the Sub-Commission made on 20 Aug. 1999.

18) Michael P. Scharf, “The Case for a Permanent International Truth Commission”, *Duke Journal of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Law*, 제7권, 1997, 375쪽.

19) Velásquez Rodríguez Cas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Series C, No. 4, 1988, para. 153.

20) 결의 제47/133호, 1992.12.18.

21)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제33권, 1994, 1529쪽. 이 협약은 1996년 3월 28일 발효하였다. 2007년 3월 현재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속에 강제실종을 비롯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얼룩진 국제사회는 체제전환과 민주주의의 정착 과정에서 인권범죄자들의 불처벌(impunity)문제와 씨름하였고 그 결과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를 위한 로마규정을 채택함으로써 강제실종 등 인권유린 책임자들의 형사처벌을 위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다.²²⁾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아래에서는 2006년 강제실종 협약이 채택될 때까지 그리고 협약 미가입국에 대하여 적용되는 강제실종에 관한 국제인권기준과 보호절차를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과 선언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1.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유엔 차원에서 실종문제는 1976년 8월 아르헨티나 인권단체에 의해 유엔 인권소위원회에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소위원회는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인권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기준이 존중되기를 바라는 결의를 채택하였다.²³⁾ 1970년대 아르헨티나에서의 ‘더러운 전쟁’(dirty war) 중에 벌어진 수많은 ‘실종’사건들에 대해 국제사회는 아르헨티나 친미 군사정부의 외교력과 자기 나라도 거명될 수 있음을 두려워한 많은 국가들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실종에 대한 국제조사를 요구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²⁴⁾ 유엔총회도 결국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13개국이 비준하였다. Annual Report of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2006, OEA/Ser.L/V/II.127, Doc. 4 rev. 1, 3 Mar. 2007, Annex 1, 1295쪽.

22)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조약 제1619호(2000.3.8 한국정부 서명, 2002년 11월 8일 국회 비준동의, 2003년 2월 1일 발효). 과거청산을 둘러싼 불처벌 문제와 국제형사법을 다룬 것으로는 예컨대 Kai Ambos, “Impunity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A case study on Colombia, Peru, Bolivia, Chile and Argentina”, *Human Rights Law Journal*, 제18권, 1997, 1쪽 참조

23) 결의 제2A(XXIX)호(1976). David Weissbrodt and Maria Luisa Bartolomei,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essures: The Case of Argentina, 1976-1983”, *Minnesota Law Review*, 제75권, 1991, 1009쪽 참조

24) 유네스코의 협약과 권고위원회의 관련활동에 관하여는 Stephen P. Marks, “The

고 강제실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지만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요구에 그쳤다.²⁵⁾ 그 후에도 수많은 강제실종 사건들이 제기되자 유엔 인권위원회는 특별절차로서 특정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라 ‘주제별’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1980년 이러한 절차로는 처음으로 강제실종 실무그룹이 설치되어 오늘날까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²⁶⁾

강제실종협약의 채택과 최근 유엔 인권기구의 통합 움직임으로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존재가 논의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실무그룹의 활동은 강제실종협약 가입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협약절차와는 별도의 유엔 절차를 발동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 실무그룹의 권한과 뒤에서 보는 유엔 강제실종선언은 궁극적으로 유엔 헌장 제55조가 부과하는 회원국의 인권보장의무에서 흘러나오므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5인으로 구성된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주요 목적은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들이 이들의 운명과 행방을 밝혀내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도주의적 성격을 띤다.²⁷⁾ 실무그룹은 정부, 국제기구, 인도주의단체와 기타 민을 만든 정보원으로부터 정보와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직·간접으로 실무그룹에 제기된 개별사건들이 충분히 기록되고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는 경우 조사를 하고, 실종자의 행방이 밝혀질 수 있도록 실종자기족들과 관련정부의 연락통로 구실을 한다.

통고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이 충족된 사건은 관련 정부에 회부된다. 실무그룹은 정부에 조사와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청하고 적어도 일 년에

Complaint Procedur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Hurst Hannum 엮음, *Guide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actice*, 2판,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2, 86쪽. 미주인권보장체제의 대응은 Jo M. Pasqualucci, “The Whol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 Truth Commissions, Impunity and the Inter-American Human Rights System”, *Bosto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Journal*, 제12권, 1994, 321쪽.

25) 결의 제33/173호, 1978.12.22.

26) 이 실무그룹의 홈페이지 <<http://www.ohchr.org/english/issues/disappear/index.htm>> 참조

27) 실무그룹의 권한에 관하여는 E/CN.4/1988/19, paras. 16-26.

한번은 규명되지 않은 사건을 상기시킨다. 실무그룹은 정부의 회신을 심리하고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연례보고서에 요약한다. 특정한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제공자는 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추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건접수 3개월 안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실무그룹은 또한 강제실종이 문제되는 국가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실종사의 생사를 불문하고 정부조사 또는 가족의 탐색의 결과로 실종자의 운명과 행방이 밝혀지거나 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을 정도로 정보가 충분히 상세한 경우 실무그룹의 임무는 끝난다. 주의할 것은 실무그룹의 접근방법이 누구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실종사건이나 실종과정에 발생했는지 모를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1992년 유엔 강제실종선언이 채택됨에 따라 실무그룹은 선언의 집행기관 구실을 맡게 되었다.²⁸⁾ 실무그룹은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채택한 모든 조치와 시행에 영향을 주는 모든 어려움에 대한 정기적인 국가보고체계를 수립하고, 실무그룹은 이 보고서를 검토하여 논평과 권고를 관계정부에 전달하고, 실무그룹이 요청하면 이 보고서의 검토를 위해 정부는 대표를 파견해야 함을 인권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²⁹⁾ 그러나 위원회는 1994년의 결의로 이 선언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봉착한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회원국에게 촉구하는 데 그쳤다. 실무그룹은 최근 각국에게 배상관련 법률, 사망추정에 관한 법적 요건과 절차, 피해자에 대한 배상여부 등에 관한 정보제출을 요구하고 있다.³⁰⁾

한국의 경우 실무그룹의 집계에 따르면 1980년부터 지금까지 강제실종으로 접수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³¹⁾ 한국의 인권문제는 물론 유엔의

28) 인권위원회 결의 제1994/39호

29) E/CN.4/1993/25, paras. 87-88.

30) E/CN.4/1998/43, para. 23.

31)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는 강제실종 실무그룹에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예컨대 E/CN.4/2006/56, 27 Dec. 2005, para. 181.

1503절차와 같은 다른 제도에 의해 다루어졌다. 또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의문사문제를 다루면서 강제실종 개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³²⁾ 국제적으로 강제실종의 개념이 불법체포와 구금이라는 인권침해의 과정에 착목한다면, 한국의 의문사 개념은 죽음이라는 결과에 중점을 두는 것 같다.³³⁾ 이러한 사정은 한국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법상의 성격규정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음도 보여준다.

덧붙여 강제실종사건이 유엔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 (underreporting)의 일반적인 원인에 관하여 실무그룹은 “빈곤, 문맹, 개념, 보복에 대한 두려움, 취약한 사법운영, 효율적이지 않은 신고 통로와 제도, 제도화된 불처벌 체제, 침묵의 관행” 등을 지적한다.³⁴⁾ 한국의 해당 시기에 각종 의문사 등 가혹한 인권유린이 계속되었음을 볼 때 당시 국외인사나 외부세계와의 접촉에 대한 엄격한 국가통제, 국제인권기준과 절차에 대한 인식과 능력의 부족 등도 특수한 사정으로 꼽을 수 있다.

2. 유엔 강제실종 선언

강제실종문제에 대한 유엔차원의 노력은 1992년 총회의 강제실종선언의 채택으로 이어졌다. 유엔 총회의 결의라는 선언의 형식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이 선언은 현장상 회원국을 구속하지는 않고 권고하는 효력만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인권위원회, 인권 소위원회, 자유권위원회 등의 강제실종에 관한 활동이 전체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승인되고 일정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선언이

32)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 1차』 (2000.10-2002.10), 제1권, 2003, 31-38, 62-63, 271-343쪽. 또한 균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참조

33) 글쓴이, 「국제인권으로 본 ‘의문사’ 문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학술회의 자료집』 별도 배부자료, 학술단체협의회, 1999 : <http://www.humanrights.or.kr/library/board_library.htm?code=library21>, 검색일: 2007.7.1.

34) 앞의 주 5, para. 17.

담고 있는 원칙들은 국가들의 강제실종에 관한 태도를 재는 시금석으로 볼 수 있으며 이제는 국제관습법의 확립된 원칙으로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의 하나를 담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선언은 협약을 비준·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서도 규범적인 효력을 가지고, 협약이 발효한 경우에도 선언은 협약 해석의 보충적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협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들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하다.

강제실종선언은 전문과 21개 조문으로 이루어진다. 선언 전문은 강제실종을 “정부의 다양한 부서나 지위의 공무원 또는 정부를 대신하거나 정부의 직접, 간접적인 지원, 동의나 묵인 하에 행동하는 조직된 집단이나 사적 개인이 사람들을 체포, 구금 또는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납치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관련된 사람들의 운명이나 행방을 밝히기를 거부하거나 이들의 자유 박탈을 인정하기를 거부하여, 이러한 사람들을 법의 보호 밖에 두는 것”이라고 정의한다.³⁵⁾ 선언은 이러한 강제실종이 현행 인권규범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심각한 범죄이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범죄’(offense to human dignity)로서 처벌하고 방지할 것을 요구한다(전문, 제1조).

구체적으로 국가는 선언에 따라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고문과 다른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강제실종을 실행하거나 허가 또는 용인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제1조, 제2조 1항). 국가는 또한 국내, 지역차원 그리고 유엔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다하여 강제실종의 방지와 철폐에 기여하여야 한다(제2조 2항). 이를 위하여 국가는 실효적인 입법, 행정, 사법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제3조).

강제실종의 형사처벌에 관하여 유엔선언은 이에 대한 수사, 소추 및 처벌의무를 부과한다(제13조, 제14조). 선언은 특히 ① 이를 형법상 범죄

35) 이 글에서 인용된 국제문서에 대한 공인된 번역문이 없는 경우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글쓴이가 옮긴 것이다.

로 규정할 것(제4조), ② 행방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범으로 취급하고(제17조 1항), 강제실종피해자의 행방이 밝혀질 때까지 수사할 것(제13조), ③ 강제실종범죄와 배상에 대한 시효적용을 배제 또는 정지할 것(제17조 2항, 3항), ④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했다는 것을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말 것(제6조), ⑤ 강제실종사건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한 경우 형벌 감경사유가 될 수 있음(제4조 2항), ⑥ 전쟁이나 비상상태 등을 이유로 강제실종을 정당화할 수 없음(제7조), ⑦ 이러한 범죄자는 사면의 이익을 누릴 수 없음(제18조), ⑧ 관련자의 공직추방(제1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배상과 관련하여 유엔선언은 국가배상의무와 범행자의 민사책임부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³⁶⁾ 또한 가족들이 겪는 극심한 고통에 비추어 가족도 강제실종의 피해자임이 인정된다.³⁷⁾ 이러한 원칙들은 이후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반 보벤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중대인권침해 피해자의 배상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³⁸⁾과 루이 주아네의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일련의 원칙’³⁹⁾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다. 강제실종 실무그룹도 이러한 원칙에 대하여 상세한 유권적 해석을 내리고 있다.⁴⁰⁾ 인권피해자의 배상문제에 대한 이러한 노력은 유엔 인권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⁴¹⁾ 2006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인권피해자의 권리장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주의법의 중대한 위반의 피해자를 위한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

36) 제5조 외국의 법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 예컨대 *Filartiga v. Pena-Irala*, 630 F. 2d 876 (1980) 참조

37) 제1조 (2). 유엔 인권이사회(자유권위원회)도 같은 입장이다. *Quinteros v. Uruguay*, Communication No. 107/1981, A/38/40, 1983.

38) E/CN.4/Sub.2/1993/8, 2 Jul. 1993, para. 137; E/CN.4/1997/104, 16 Jan. 1997, Appendix.

39) E/CN.4/Sub.2/1996/18, 20 Jun. 1996; 김은영 옮김, 「인권(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 가해자에 대한 불처벌의 문제」, 『이달의 민변』, 96년 9월호, 72쪽.

40) General comments on article 19 of the Declaration, E/CN.4/1998/43, paras. 68-75 참조

41) 예컨대 E/CN.4/1999/65, 8 Feb. 1999.

으로 모아졌다.⁴²⁾

나아가 유엔선언은 강제실종문제를 다루는 기관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신속, 철저, 공정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증인의 출석 및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과 현지조사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다(제13조). 모든 형태의 인권침해를 다룰 이러한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원칙들은 유엔 인권소위원회에 의하여 더욱 자세하게 규정되고 있다.⁴³⁾ 또한 국가는 재소자, 변호인, 수사관, 증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보복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밖에도 선언은 강제실종의 방지를 위하여 구금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적 구제수단에 대한 권리는 강제실종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고 하였다.⁴⁴⁾ 또한 관계조사기관은 모든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권을 가지고(제9조 2항), 국가는 이에 대한 엄격한 감독의무와 구금자 명단을 작성할 의무를 진다(제12조).

강제실종선언의 규정들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강제실종 실무그룹이 지적한 7가지 장애사유는 한국의 현실과 관련하여서도 경청할 만하다: ① 실종문제를 해결할 일부 정부의 정치적 의지 부족은 흔히 사건들이 수사도 받지 않게 되거나 자행자가 처벌받지 않게 되도록 유도하며 그에 따라 실종자가족들이 당국에 대해 수사요청을 미리 포기하게 됨, ② 강제실종을 독자적인 범죄로 규정하거나 구금자 명부를 만들게 하는 등 강제실종을 방지하고 근절할 실효적인 입법, 행정, 사법, 기타 조치가 결여되어 있음, ③ 국제인권협약들의 불충분한 이행,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의 부조화 등으로 선언이 이행되지 않고 국가가 적절한 국제책임을 지지 않게 됨, ④ 강제실종사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일반적인 인권의식 수

42) 유엔 총회결의 제60/147호, 2006.3.21. M. Cherif Bassiouni,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Victims' Rights", *Human Rights Law Review*, 제6권, 2006, 203 쪽 참조

43) E/CN.4/Sub.2/1997/20, 2 Oct. 1997.

44) 제9조 1항, 제10조 General comments on article 10 of the Declaration, E/CN.4/1997/34, 13 Dec. 1996, paras. 23-30 참조

준이 개발되지 못함, ⑤ 일부 국가에서 NGO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인권 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음, ⑥ 시민에 대한 선언의 홍보 부족, ⑦ 선언규정 불이행의 정당화사유로 테러리즘에 대항한다는 구실을 내세우는 태도 등이다.⁴⁵⁾

III. 유엔 강제실종협약 채택의 경과

1980년대부터 아르헨티나의 ‘5월광장 어머니회’와 같은 비정부단체(NGO)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범세계적 차원의 국제협약 제정을 위한 움직임은 1992년 유엔 강제실종선언과 1994년 미주 강제실종협약으로 더욱 활발하여졌다.⁴⁶⁾ 강제실종선언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협약 초안 작성을 맡게 되었다.⁴⁷⁾ 유엔의 관련 특별보고관들과 실무그룹,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전문가들, 민간단체들의 자문을 받아 진행된 초안 작업은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이 강제실종을 인도에 반한 범죄로 포함함에 따라 더욱 고무되었다.

인권소위원회의 작업을 넘겨받은 유엔 인권위원회의 준비는 2001년 이래 국가의 인권침해적 반테러활동이라는 새로운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테러리스트로 지목된 사람들이 실종되고 판타나모 등지의 비밀감옥에 수감되고 고문이 가능한 나라로 테러혐의자가 보내지는 등 이른바 ‘비상 인도’(extraordinary rendition)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강제실종 실무그룹을 비롯한 유엔의 특별보고관들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강제실종 선언을 포함한 국제인권기준을 지킬 것을 요청하였다.⁴⁸⁾

유엔 인권위원회가 설치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⁴⁵⁾ A/61/289, 11 Aug. 2006, para. 68.

⁴⁶⁾ 예컨대 Amnesty International, “Disappearances” and Political Killings, 1994; Reed Brody & Felipe González, “Nunca Más: An Analysis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on ‘Disappearances’”, *Human Rights Quarterly*, 제19권, 1997, 365 쪽.

⁴⁷⁾ 예컨대 E/CN.4/Sub.2/1998/19, 19 Aug. 1998.

⁴⁸⁾ 예컨대 앞의 주 31, para. 594.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적 문서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기간 무기한 실무그룹'은 5차에 걸친 회기 끝에 2005년 9월 협약초안을 작성하였다.⁴⁹⁾ 이 초안이 채택되기까지 특히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웠던 주요 문제들은 비국가행위자, 개인의 사생활이나 안전, 범죄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구금에 관한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국가의 권한에 관련된 것이었다.⁵⁰⁾ 또한 협약의 발효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서만 위원회가 권한을 가질 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기도 하였다.⁵¹⁾ 협약의 이행기구에 관하여서도 기존의 자유권위원회에 맡길지 아니면 새로운 독자적 위원회를 만들지 논의가 분분하였다.⁵²⁾ 위원회의 현장방문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최종안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⁵³⁾

강제실종협약안은 그동안 경제사회이사회 밑에 있던 인권위원회가 해산되어 이를 대체하여 유엔총회 산하로 격상된 인권이사회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유엔인권체제의 개편에 따른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인권이사회는 2006년 6월 29일 대체로 환영한다는 이사국들의 발언과 함께 별다른 논의와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협약안을 채택하고 유엔 총회에 회부하였다.⁵⁴⁾ 인권이사회의 초대이사국 선출에 나서지 않은 미국은 구상서를 제출하고 협약안의 일부 규정들에 대한 유보 입장을 표명하였다.⁵⁵⁾

인권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유엔 총회는 우선 강제실종 문제에 관한 결의(제59/200호)를 채택하고 회원국들에게 강제실종선언 이행 노력과 장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그루지야, 쿠웨이트, 레바논, 모리타니아, 멕시코, 파나마, 러시아, 시리아, 터키, 우크라이나,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등이 관

49) 협약초안문은 E/CN.4/2006/57, 2 Feb. 2006, Annex I.
 50) 위의 보고서, paras. 11, 69-160. 이전 초안은 E/CN.4/2005/WG.22/WP.1/REV.4, Sep. 23 2005.
 51) 앞의 보고서, paras. 65-66.
 52) 앞의 보고서, paras. 69 이하. 또한 E/CN.4/2005/56, paras. 148-169 참조
 53) 앞의 주 49, para. 49.
 54) A/61/53, paras. 51 이하.
 55) A/HRC/1/G/1, 27 Jun. 2006.

련 정보를 제공하였다.⁵⁶⁾

2006년 11월 2일 총회의 제3위원회(사회, 인도, 문화) 제37차 회의에서 77개 지지국을 대표하여 프랑스가 협약을 담은 결의안을 제출하였다.⁵⁷⁾ 나중에 27개국이 추가로 지지국 대열에 들어섰다.⁵⁸⁾ 이 결의안은 프랑스 대표가 구두로 ‘환영한다’(hails)를 ‘사의를 표명한다’(acknowledges)로 수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3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그대로 채택되었다.⁵⁹⁾

협약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다음 몇몇 국가들은 협약 규정의 해석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⁶⁰⁾ 캐나다는 자유권위원회가 협약감시기능을 맡는 것이 나왔을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은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던 유보입장을 유지하였는데 강제실종의 정의규정이 명확하게 고의를 요건으로 할 것, 제32조의 진실에 대한 권리의 부정, 연방체제상 강제실종을 독자범죄로 하기 어려움, 국제인도주의법과의 관계, 자유권위원회를 협약감시기구로 할 것,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모호성,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한 것을 항변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금지되었는지 알지 못한 행위를 한 정부직원을 기소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연방차원에서 시효에 관한 규정을 이행하기 어려움, 불송환에 관한 규정이 국제법원칙과 일치하지 않음, 구금시절에 관한 기준과 접근 문제가 국내법과 일치하지 않지 않을 가능성, 제18조의 구금에 관한 정보제공 규정이 국내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합리적이지 않은 기준을 설정함,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아동의 정의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인도는 독자적인 협약이나 새로운 이행기구보다 자유권규약에 대한 선택의정서가 낮고 고의를 요건으로 할 것 등을 이야기하였다. 영국은 후술할 강제실종의 정의에 관한 해석의견을 피력하고, 구금정보제공, 국제인도주의법과의 관계, 아동의 입양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일본은 개념 정의에 관한 영국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필리핀은 협약이 좀더 비국가단체에 의해 자행되는 실종을 반영할 것을 주문하

⁵⁶⁾ A/61/289.

⁵⁷⁾ A/C.3/61/L.17, Oct. 27 2006.

⁵⁸⁾ 지지국 명단은 A/61/448, Dec. 6 2006, para. 5.

⁵⁹⁾ 앞의 보고서, paras. 8, 28.

⁶⁰⁾ 각국의 발언은 A/C.3/61/SR.45; GA/SHR/3872, Nov. 13, 2006 참조

였다. 뉴질랜드는 협약이 기존의 국제법을 후퇴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군지휘관의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국가간의 해석과 선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엔총회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2006년 12월 20일 컨센서스로 제3위원회의 협약안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입장들은 각국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할 때 다시 검토될 것으로 보이며 몇몇 국가의 경우 해석선언의 형식으로 덧붙여질 가능성이 크다.⁶¹⁾

IV. 유엔 강제실종협약의 주요 내용

유엔 강제실종협약은 전문과 본문 45개조로 구성된다. 본문은 다시 3개의 부로 나뉘는데, 제1부는 강제실종에 관한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주로 다루고, 제2부는 강제실종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3부는 협약의 비준·가입절차, 효력발생 요건, 분쟁해결, 협약 개정 등에 관한 최종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협약 전문은 강제실종문제에 대해 국제인권법, 국제인도주의법과 국제형사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특히 일정한 경우 국제법상 인도에 반하는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주목한다. 협약의 주요 목적은 강제실종을 방지하고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불처벌과 투쟁하는 데에 있다. 협약은 또한 인권의 측면에서 ‘강제실종을 당하지 않을 사람의 권리’로 강제실종에 대한 인권을 새롭게 관념하고, 피해자의 정의와 배상(권리구제, reparation)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여 피해자인권을 강화한다. 더욱이 그 동안 과거청산과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으로 거론되었던 피해자의 진실을 알 권리와 정보를 얻을 권리가 역사상 처음으로 강제실종과 관련하여 명문으로 인정되었다. 아래에서는 협약의 주요 내용을 강제실종의 개념정의, 강제실종에 관한 인권과 국가의 의무에 관한 실체적 규정, 협약이 두고 있는 협약이행감시기구인 강제실종위원회 관련 규정과 협약

61) 해석선언과 같은 유보에 대한 인권 관련 논의로는 예컨대 E/CN.4/Sub.2/2004/42, 19 Jul. 2004.

의 시간적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강제실종의 정의

강제실종협약 제2조는 강제실종을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권한부여, 지원이나 묵인 아래 행동하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의 집단이 체포, 구금, 납치 또는 다른 형태로 자유를 박탈하고, 실종된 사람의 자유 박탈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거나 운명이나 행방을 숨겨 그 사람을 법의 보호밖에 두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협약은 이 정의를 기초로 강제실종 되지 않을 인권과 강제실종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확립한다. 협약은 또한 '국가의 권한부여, 지원이나 묵인'이 없이 개별적으로 자행된 제2조에 규정된 행위를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협약당사국의 의무를 부과한다(제3조). 다시 말하여 국가의 관여가 없는 실종의 경우 일단 제2조의 강제실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두고 있어서 사인이나 테러집단, 반란단체 등에 의한 강제실종도 가능한지 문제를 놓고 있다. 또한 협약이 강제실종선언과 마찬가지로 강제실종도 일정한 경우 인도에 반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함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와의 관계에 관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더욱이 이 협약체제의 발동요건이기도 한 강제실종의 정의문제는 협약이 강제실종을 국내 법상 형사범죄로 처벌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중요성을 더하며 앞으로 협약비준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고, 협약의 이행과 국내이행입법의 제정 시에 난점이 될 수 있다.

협약의 정의 규정을 강제실종선언의 정의와 비교하면 크게 다른 점이 없다. 미주 강제실종협약 제2조는 강제실종(forced disappearance)을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권한부여, 지원이나 묵인 하에 행위하는 사람이나 사람들의 집단이 자행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람이나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 사람의 행방에 관한 정보가 없거나 자유 박탈의 인정이나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적용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이나 절차적 보장절차에 호소하는 것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는데, 무엇보다 ‘법의 보호밖에

두는 것'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힌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국제형사재판 소규정은 강제실종이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하여질 경우 인도에 반한 죄의 한 형태로 명시적으로 인정한다.⁶²⁾ 이 규정 제7조 제2항은 ‘사람들의 강제실종’을 “국가 또는 정치조직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허가·지원 또는 묵인을 받아 사람들을 체포·구금 또는 유괴한 후, 그들을 법의 보호로부터 장기간 배제시키려는 의도하에 그러한 자유의 박탈을 인정하기를 거절하거나 또는 그들의 운명이나 행방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 조항은 국가이외에 정치조직을 언급하고, 장기간의 구금을 상정하고, 법의 보호에서 배제한다는 의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강제실종협약의 규정과 차이가 있고 협약 제정 전후의 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강제실종협약의 초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의 규정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한대로 협약 제정과정 중에 몇몇 국가들이 이견을 제시하였다.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강제실종의 정의에 ‘고의’가 요건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은 특히 강제실종 개념의 해석에 관하여 강제실종이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 ① 체포, 구금, 납치 또는 다른 형태의 자유 박탈, ② 그러한 행위가 국가기관이나 국가의 권한부여, 지원이나 묵인 아래 행동하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의 집단에 의해 자행될 것, ③ 그 행위에 이어 실종된 사람의 자유 박탈의 인정 거부나 운명이나 행방을 숨길 것, ④ 실종된 사람이 법의 보호밖에 놓일 것, 다시 말해 실종자의 자유의 박탈이나 구금이 적용되는 “국내법규의 범위 안에 있지 않거나” 그러한 법규가 적용되는 국제법과 양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시기적절하게 2007년 3월 20일 강제실종의 정의에 관한 일반논평(general comment)을 내놓았다.⁶³⁾ 이 논평은 강제실종선

62) 제7조 1항. 또한 Elements of Crimes, PCNICC/2000/1/Add.2, 2 Nov. 2000, 15-16쪽 참조

63) <<http://www.ohchr.org/english/issues/disappear/index.htm>>: 검색일 2007.7.1. 이밖에도 실무그룹은 선언 제3조 (국가의 의무), 제4조 (형사처벌 관련), 제10조 (구

언상의 정의에 관한 것이지만 협약의 규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함에 비추어 앞으로 강제실종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실무그룹은 이 논평에서 강제실종에 관한 정의 규정들이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다만 로마규정이 정부를 대신하거나 지원, 동의 또는 묵인 아래 행위하지 않는 정치집단도 강제실종범죄를 저지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범죄 구성요건으로서 피해자에게 장기간 법의 보호를 박탈할 의도를 요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실무상 정부와 무관하게 행동하는 테러리스트나 반란단체가 저지른 행위는 실종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힌다.

강제실종이 성립하기 위하여 범행자가 피해자를 법의 보호밖에 두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에 대하여 실무그룹은 강제실종행위는 사람을 법의 보호밖에 두는 결과를 가진다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답한다. 피해자가 이미 사체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제 살아있든 죽었든 행방이 밝혀진다면 통상적으로 강제실종으로 볼 수 없지만 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자유의 박탈이 있었고, ② 적어도 간접적으로 묵인에 의한 정부관료의 관여에 의한 것이고, ③ 정부관료가 그를 인정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운명이나 행방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선언의 규정이 체포, 구금, 납치에서 출발하는 것에 비추어 강제실종은 불법구금이나 처음에는 적법한 체포나 구금에 의해 개시될 수 있다고 하여 강제실종이 불법한 자유의 박탈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실무그룹은 또한 피구금자가 장기간 기소되지 않고 구금될 경우 선언 위반이라는 선언 제10조에 관한 일반논평을 확인하고, 그렇다고 단기간의 구금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⁶⁴⁾

구금 중에 이루어진 비사법적 처형은 피구금자를 법의 보호밖에 두는 것으로 진정한 강제실종이라고 하고, 피해자의 사체가 훼손되거나 고문이

금, 제17조 (계속법), 제18조 (사면), 제19조 (배상)에 관한 일반논평을 하였다. Compilation of General Comments on the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http://www.ohchr.org/english/issues/disappear/GeneralCommentsCompilationMay06.doc>> 참조, 검색일: 2007.7.1.

64) E/CN.4/1997/34, para. 29도 참조

나 손발이 묶인 흔적이 있을 경우 몇 시간일지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자유가 박탈된 것이며 실종 되지 않을 권리는 물론 고문 받지 않을 권리,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제실종의 정의문제를 놓고 강제실종으로 인정되는 사건의 범위를 좁히려는 (현재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일부 국가와 실종되지 않을 권리의 보호를 위해 확대하려는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입장이 대척점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한 유권적인 해석은 발효후 설치될 강제실종위원회에 맡겨질 터이지만 강제실종의 개념을 둘러싼 논쟁이 자칫 수십 년이 걸린 협약의 실효성을 떨어뜨리지 않을지 우려하며, 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친인권적인 결론이 나길 기대한다.

2. 국가에 의하지 않은 실종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협약적용의 기초가 되는 강제실종은 국가에 의한 것이다. 국가이외의 행위자나 실체에 의해 종종 자행되는 강제실종에 대하여 협약은 단일한 조항을 두어 제3조에서 수사·처벌의무만을 부과할 뿐 협약 전체가 적용되도록 하지는 않는다. 이는 어떠한 실종이든지 국가가 지는 최소한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셈이다. 이러한 강제실종 개념의 확장은 최근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장단체에 의해 피랍된 한국인들의 경우처럼 내전 중 반란단체나 테러단체 등에 의해 저질러지는 납치 따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이 존재한다는 입증이 실제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의 관여를 밝힐 수 없는 경우에도 보충적으로 국가가 최소한으로 취하여야 할 조치를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도 현실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유엔의 한 특별보고관은 국가기관에 의해 구금된 후에 실종된 경우, 국가기관이 믿을 만한 실종보고에 즉각 대응하지 않은 경우, 적절한 법적 구제수단이 효율적이 아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믿을 만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상황을 밝히려고 행동하지 않은 경우

또는 국가기구 안에서 개인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경우 국제법상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다.⁶⁵⁾ 그는 특히 칠레에서 ① 국가기관에 의해 체포된 적어도 600명의 사건이 규명되지 않았고, ② 체포에 있어서 비밀경찰(DINA)은 국제법에 합치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고, ③ 이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효율적이지 못했으며, ④ 정부는 수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⑤ 정부는 유엔과 다른 국제기관과 충분히 협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며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결론은 유엔 인권위원회와 총회에서 받아들여져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결정적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실종사건에 대한 국가의 부작위에 근거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중요하다. 비국가실체에 의한 실종의 경우 국가가 지는 의무에 관한 국제법은 협약을 뛰어넘어 앞으로 더 발전될 여지가 있다.

3. 강제실종에 관한 인권

협약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1조 제1항은 누구도 강제실종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여 새로운 인권개념으로 강제실종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한다. 협약은 비상사태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등의 규정을 보충하여 “전쟁상태나 전쟁의 위협, 국내정치불안정이나 기타 공공비상사태이든 어떠한 예외적인 사정이든 강제실종의 정당화사유로 원용될 수 없다”고 하여 이 권리를 어느 때나 보장되어야 할 절대적 인권의 하나로 확인한다. 협약은 또한 비밀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제17조 제1항).⁶⁶⁾

더욱이 협약은 국제인권협약으로서는 처음으로 강제실종에 관한 피해

65) A/34/583/Add.1, 1979, paras. 168-172; Henry J. Steiner & Philip Alst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Context: Law, Politics, Morals*, Clarendon Press, 1996, 422-423쪽에서 재인용.

66) 유엔 선언 제9조 1항, 제10조, 미주협약 제10조 또한 앞의 주 44, paras. 23-30 참조

자의 권리를 명문으로 보장한다(제24조). 구체적으로 협약은 ‘실종된 사람과 강제실종의 직접적인 결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개인’으로 피해자의 범주를 넓게 잡고(제1조 제2항), 피해자는 ‘강제실종의 사정, 수사의 과정 및 결과와 실종자의 운명에 관하여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진다. 피해자는 또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과 적절한 경우 원상회복, 사회복귀, 존엄성과 명성의 회복을 포함한 만족, 재발방지보장과 같은 배상형태’를 포함하는 배상(권리구제)의 권리를 갖는다(제24조 제4·5항). 협약은 나아가 강제실종관련단체의 결성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제24조 제7항). 이외에도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강제실종에 관한 국가의 의무에 상응하는 권리를 가지므로 이들의 권리의 목록은 늘어난다.

4. 강제실종에 관한 국가의 의무

이에 관하여 협약은 강제실종에 대하여 실효적인 입법, 행정, 사법,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강제실종선언 제3조와 같은 일반규정을 두지 않고, 개별적 의무들만을 나열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 헌장의 인권관련 규정과 자유권규약 제2조에서와 같은 국가의 일반적인 인권보장의무와 강제실종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선언과 같은 취지의 의무가 국가에게 부여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강제실종협약이 부과하는 구체적인 당사국의 의무는 아래와 같이 나누어볼 수 있다. 주의할 것은 강제실종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는 협약에 열거된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제37조).

(1) 형사처벌의무

협약은 강제실종이 당사국의 국내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⁶⁷⁾ 형사입법의무에 관하여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국내법상 가혹행위 등으로 처벌하는 것으로는 미흡하고 별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고 한다.⁶⁸⁾ 그러나 선언의 강제

67) 제4조, 유엔선언 제2조, 제4조 제1항, 미주협약 제1조 a호, 제3조

실종 정의를 그대로 법제화할 필요는 없고 강제실종을 납치, 유괴 등 관련범죄와 구별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하여 당사국의 입법재량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실무그룹은 처벌규정이 ① 관련자의 의사에 반하는 자유의 박탈, ② 적어도 간접적으로 목인에 의한 정부관료의 관여, ③ 관련자의 운명과 행방의 공개 거절이라는 최소한의 구성요건을 담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협약은 또한 소송방해, 정보기록해태, 정보부실기재, 정보제공 거절 등의 행위가 강제실종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지조치를 취하고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⁶⁹⁾

앞에서 보았듯이 협약은 강제실종이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관행”이 될 경우 국제법상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구성함을 확인하고 있다(제5조). 또한 협약 제6조는 구체적으로 처벌대상 행위자, 상급자의 책임의 범위, 상급자의 명령과 형사책임에 관하여 규정하여,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에 관하여 지금까지 발전된 국제형사법의 적용을 강제실종에 대하여 인정하였다.⁷⁰⁾ 협약 제7조는 강제실종범죄에 대해 적절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함을 밝히고 형사책임의 경감과 가중사유에 관하여 규정한다.⁷¹⁾

공소시효와 강제실종의 기산점에 관하여 협약은 강제실종이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지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당사국은 형사절차에 관한 시효기간이 장기적이도록, 강제실종범죄의 극도의 심각성에 비례하도록, 강제실종범죄의 지속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범죄가 중단된 순간부터 진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⁷²⁾ 공소시효문제에 관한 협약의 해법이 상당히 구체적임에 따라 그 동안의 논란을 종식할 수 있는

68) E/CN.4/1996/38, 1995, paras. 54-55.
 69) 제22조; 유엔 선언 제12조; 미주협약 제11조 이호중, 『강제실종협약의 가입·비준 관련 국내법적 쟁점』, 『유엔 강제실종협약 관련 쟁점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7 참조
 70) 유엔선언 제6조; 미주협약 제8조 또한 협약 제23조 제2항 참조
 71) 유엔선언 제4조 제2항; 미주협약 제3조
 72) 제8조; 유엔선언 제17조; 미주협약 제3조, 제7조 E/CN.4/2001/68, 18 Dec. 2000, paras. 28-32 참조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⁷³⁾

당사국은 또한 강제실종범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한 권한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당사국은 강제실종범죄 혐의자가 관할영역에 현존하는 경우 재판권을 행사하거나 국제적 의무에 따라 다른 국가로 추방, 인도하거나 그 국가가 재판권을 인정한 국제형사법정(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에 인도할 의무를 진다(제2항). 이러한 국제인도주의(또는 전쟁법) 협약 등에서 인정되어온 인도 또는 처벌(aut dedere aut judicare)의무 말고도 협약은 강제실종범죄 혐의자가 국내에 들어온 경우 구금하거나 그의 현존을 확보하기 위해 기타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의무와 피구금자의 권리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제10조). 인도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절차에 관하여서도 협약은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제11조).

범죄인인도의 경우 협약 제13조는 강제실종범죄를 정치범으로 취급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당사국이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이 규정하는 인도 가능한 범죄로 다루도록 한다. 국가는 일반적으로 강제실종의 방지와 처벌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피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는데 협약은 강제실종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14조).

(2) 조사의무

협약 제12조는 실종사실을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할 개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국가는 이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심사하고, 지체 없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의무를 진다.⁷⁴⁾ 또한 고발자, 증인, 실종자 친지, 변호인 등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당국의 직권조사의무, 조사당국의 권한, 인적·물적 자원, 정보접근, 구금시설에의 접근과 조사방해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조사의무는 실제에 있어서 일반적인 수사나 소추기관이 지는 것으로, 협약은 강제실종문제를 전담할 독자적인 기구의 설치여부에

73) 예컨대 글쓴이, 「국제법으로 본 공소시효문제」, 『민주법학』 제21호, 2002, 197쪽.

74) 유엔선언 제13조, 제14조; 미주협약 제1조(b).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엔선언이 독립한 기관을 두도록 한 것과 인권침해 조사위원회에 관한 인권소위원회의 원칙 등에 비추어볼 때 당사국은 별도의 강제실종기구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국가인권기구를 통하여 협약의 내실 있는 국내이행 감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약은 실종자 조사과정에서 수집되고 전달된 의학, 유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조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고 하는 등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한다(제19조). 제20조는 협약초안의 작성과정에서 쟁점이 되기도 한 정보접근권에 대한 제한문제를 다루고 있고, 정보접근권자들이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법구제권을 보장한다.

(3) 피해자지원 상호협력·지원의무

당사국은 강제실종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협력하여야 하고, 실종자 수색, 위치확인, 석방, 사망시 사체발굴·확인, 유해송환에 있어서 서로 협력할 의무를 진다(제15조). 또한 당사국은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24조 제3항). 이러한 의무의 취지는 인도주의적인 것으로 그 동안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벌인 활동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위안부’문제, 한국전쟁 전후의 보도연맹사건, 한국전쟁 중 민간인학살, 각종 의문사 등 한국의 과거청산활동에 있어서도 이 규정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4) 강제실종될 위험이 있는 경우 추방 등의 금지

당사국은 강제실종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그러한 나라로 사람을 추방, 송환, 인도할 수 없다(제16조). 이 규정에 대한 미국의 반대는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

(5) 구금과 관련된 의무

협약은 강제실종의 요건인 자유의 박탈에 관하여 상당히 방대한 조문을 마련하고 있다. 구금에 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하여는 자유권규약에서 이미 다루고 있지만(제9조), 실종 문제가 갖는 심각성에 비추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협약 제17조는 당사국에게 구금에 관한 입법의무, 구금에 관한 공식 등록이나 기록을 펴내고 유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다른 인권침해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협약은 구금에 대한 사법감시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⁷⁵⁾ 미국의 판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별이는 법정투정을 지켜보면 이러한 규정은 의미심장하다. 제18조는 피구금자의 친지 등이 접근할 수 있는 구금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사항을 제시하고, 구금에 관한 정보 접근권자와 수사관여자를 정보조사의 결과로 가해지는 부당한 대우나 복수 등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요청한다.⁷⁶⁾ 제21조는 피구금자의 석방사실을 신뢰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피구금자가 석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한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구금에 대한 감시야말로 가장 실제적이고 가치 있는 이행감시 수단이라고 한 바 있으며,⁷⁷⁾ 구금에 관한 규정은 강제실종 방지라는 협약 목적의 달성에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피구금자 등록명부는 강제실종에 관한 소송에서 흔히 봉착하는 증거확보의 어려움과 구금여부에 대한 정보가 생사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장기구금의 문제는 위에서 본 바 있다.

(6) 피해자배상의무

당사국은 강제실종 피해자가 배상(권리구제)과 신속, 공정하고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국내법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제24조 제4항). 당사국은 또한 실종자의 운명이 명확해질 때까지 조사를 계속할 의무를 지며, 사회복지, 재정문제, 가족법, 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실종자

75) 유엔 선언 제10조 제1항.

76) 유엔 선언 제9조(2).

77) E/CN.4/1997/34, para. 22.

와 친지들의 법적 상황에 대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6항). 특히 강제 실종 실무그룹은 실종관련 민사규정이 강제실종 문제를 반영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⁷⁸⁾

(7) 교육의무, 고발의무 등

당사국은 민간이건 군이건, 법집행공무원, 의료인, 공무원, 피구금자의 유치나 대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훈련과정이 협약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3조). 당사국은 또한 법집행공무원 등이 강제실종에 대하여 보고하고 고발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항). 과거 남미국가 등지에서 자행되었던 강제실종자의 자녀납치 문제와 관련하여 협약은 이러한 아동의 불법이송과 아동의 신원을 증명할 문서의 변조, 은닉 또는 파괴를 금지하는 등 범죄예방과 처벌의무를 부과한다(제25조).

5. 강제실종위원회 - 협약이행기구와 절차

새로운 유엔인권기구가 될 강제실종위원회(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는 협약이 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개인자격으로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제26조 제1항). 현재 진행되는 인권관련 조약기구 개편노력을 반영하여 협약은 특히 위원회를 계속 존치할지 여부를 발효 후 4-6년 사이에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27조). 협약은 또한 그 동안 각종 인권기구의 활동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일치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여 위원회는 권한을 행사할 때 국제인권협약에 의해 설치된 조약기구, 특히 자유권위원회의 견해와 권고와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한다(제28조 제2항). 위원회 권한의 시간적 한계에 관한 제35조는 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며 아래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협약은 이행감시절차로서 다른 국제인권절차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

⁷⁸⁾ E/CN.4/1998/43, paras. 72-75.

는 국가보고서 심의절차(제29조), 선택적인 개인통보절차(제31조)와 국가간 통보절차(제32조)를 두고 있다. 위원회도 역시 연례활동보고서를 당사국과 유엔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6조). 특기할 것은 NGO의 개인통보제도 이용가능성이 확보된 것이다(제31조 제1항).

협약은 이러한 통상적인 절차 말고도 그 동안 유엔인권기구들이 관행적으로 하여오던 긴급행동절차(제30조), 현지방문(제33조) 등의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강제실종이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근거가 충분한 징후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유엔 사무총장을 통하여 유엔총회에 통보할 수 있다(제34조). 이 규정은 협약 준비 중에 기존의 인권보장절차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⁷⁹⁾

6. 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강제실종협약은 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다. 다만 제35조 제1항은 위원회가 가지는 권한의 시간적 범위에 관하여 명문으로 “위원회는 이 협약의 효력발생 후에 개시된 강제실종에 관하여서만 권한을 갖는다”라고 규정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협약의 발효 이후에 당사국이 된 경우 당사국은 협약이 당해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후에 개시된 강제실종에 관하여서만 위원회에 대하여 의무를 진다고 한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제실종은 성격상 계속적인 인권침해에 따라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개시된 강제실종이거나 이미 강제실종상태에서 벗어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협약 제35조는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사건의 결과가 선택의정서의 발효 후에 피해자의 권리에 계속하여 영향을 미칠 경우 선택의정서의 발효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다는 일반논평을 채택한 점⁸⁰⁾과 유럽인권재판소가 재산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재산권침해는

⁷⁹⁾ 앞의 주 49, para. 57.

⁸⁰⁾ General Comment No. 24, Fifty-second session, 1994, para. 14.

계속적인 침해라고 판결한 점⁸¹⁾ 등을 고려하여 마련한 규정으로 보인다. 즉 협약은 계속적인 인권침해가 제기하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위원회 권한의 범위를 발효 후에 개시된 강제실종으로 제한한 것이다.

위원회의 시간적 권한 범위 문제와는 구별하여 협약의 실제적인 규정들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협약은 일부러 정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조약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일반원칙⁸²⁾에 따라서 협약의 발효 이후에 발생한 강제실종에 관하여 협약상의 권리, 의무가 생긴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계속적 침해내지 계속범의 문제가 특수한 문제로 여전히 논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견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발효이전의 사건에서 발생하는, 협약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배상이나 처벌에 대한 권리 등은 강제실종에서 파생되는 제2차적 권리로 상정하고 강제실종과는 별도로 취급하여 국가는 그에 따른 의무를 진다는 논리구성이 가능한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주 강제실종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멕시코는 협약비준을 하면서 “협약 규정들은 협약의 발효 후 명령, 실행 또는 자행된, 사람의 강제실종을 구성하는 행위에 적용된다”는 해석선언을 덧붙인 바 있다.⁸³⁾ 멕시코가 이러한 선언을 굳이 한 것은 거꾸로 강제실종이 끝나는 시점에 관한 문제가 명확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러한 논란과 별개로 법적으로 협약이 발효 이전의 실종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하여도 발효 이전의 사건들에 대한 사실상의 적용(de facto application)을 막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다. 당사국은 비준하면서 또는 어느 때나 협약발효 이전에 발생한 강제실종에 대하여 협약상의 권리, 의무를 적용하기로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제35조의 초안 규정이 논의될 때 아르헨티나, 칠레와 이탈리아 대표들은 강제실종이 계속범을

81) 예컨대 *Loizidou v. Turkey (Merits)*, 1996-B ECHR 2216, para. 41. 미주인권협약에서의 논의는 Jo M. Pasqualucci, *The Practice and Procedure of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107-117쪽 참조.

8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조약 제697호(1980.1.27 발효), 제28조

83) 앞의 주 21, 1302-1303쪽.

구성하므로 협약을 비준할 때 진실, 정의와 배상에 대한 권리나 아동실종에 관한 권리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협약발효 이전에 개시되었으나 아직 해명되지 않은 강제실종에 확대할 것을 내용으로 해석선언을 할 것을 공언한 바 있다.⁸⁴⁾ 이러한 견해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들 가운데 이미 국제관습법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진 권리의 경우 협약의 발효시점과 관계없이 각 국가에 의해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서 있는 것으로 보여 경청할 만하다.

이와 같이 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는 만큼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당사국의 해석에 맡겨진 문제로 볼 수 있고, 향후 위원회의 해석이 주목된다. 강제실종협약의 목적과 취지에는 앞으로 발생할 사건에 대한 예방, 방지 측면과 함께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인권적 과거를 청산하려는 노력에 터잡아 관련 규범을 정리한 의미도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와 협약제정의 역사를 감안하면 과거 발생한 강제실종 사건이 협약이 부여하는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협약의 유용성을 심각하게 감소시키는 일일 것이다. 적어도 그 동안 협약의 적용을 축소내지 제한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지는 유보나 해석선언을 이번에는 협약을 확대적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시아에서 과거청산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경우 술선하여 이러한 취지의 해석선언을 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덧붙여 한국의 각종 과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있어서도 협약의 내용을 고려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을 주문해 본다.

지금까지 강제실종협약의 주요한 측면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강제실종선언과 비교할 때 협약에는 무엇보다 사면과 관련자의 공직추방에 관한 규정이 없다. 또한 협약은 1989년 경제사회이사회가 채택한 ‘비사법적, 자의적, 약식처형의 효율적 방지와 수사에 관한 원칙’(결의 제1989/65호, 1989.5.24)에 담긴 기준들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았음도 눈에 띈다. 특

⁸⁴⁾ 앞의 주 49, para. 65.

히 이 원칙은 부검과 관련하여 ‘적절한’ 부검이 실시될 때까지 시신을 처리할 수 없고, 부검이 독립적인 기관·사람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망자 가족들의 부검 입회권을 규정하고 있다.⁸⁵⁾ 협약에 담기지 않은 사항은 다른 관련 국제법원칙에 의하여 보충될 것이지만(제37조), 이번 기회에 협약의무로 규율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

V. 맺으며

유엔 강제실종협약은 강제실종 문제에 대한 국제, 국내 차원의 노력을 반영하여 실제법규와 각종 보호절차를 집대성하는 의미를 갖는다. 강제실종이 제기하는 인권문제는 물론이고 이에 대한 대응도 다양하고 복잡하였으며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현실에서 독자적인 인권조약으로 채택된 강제실종협약은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결노력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협약은 강제실종의 방지와 처벌을 두 축으로 강제실종을 하지 않을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무엇보다 책임자 처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강제실종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제법상 ‘인도에 반하는 범죄’가 됨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획기적으로 ‘진실을 알 권리’를 비롯한 강제실종 ‘피해자’들의 권리들이 국제협약에 처음 규정되고 공소시효와 피해배상 등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인권기준은 그 동안의 법발전을 협약에 담았다는 의미에서 다른 인권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도 확산되어야 하며, 협약에 의해 설치될 강제실종위원회에 부여된 각종 권한 역시 다른 인권기구에 의해서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강제실종협약은 남미국가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과거

⁸⁵⁾ 12, 14, 16항. 더 상세히는 United Nations, *Manual on the Effectiv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of Extra-Legal, Arbitrary and Summary Executions*, New York, 1991. ‘비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하여는 아직 유엔선언이나 조약과 같은 문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청산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 따라 한국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 협약의 비준과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테러와의 전쟁’ 속에 이루어지는 관타나모 등지에서의 불법구금, 비밀감옥 등 여전히 강제실종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오늘날의 인권현실도 주목해야 한다. 협약이 강제실종이 제기하는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한 각종 입법을 요구함에 따라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필요하고, 사면에 관한 법률도 차제에 재검토하여야겠다. 이러한 이행법률의 마련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행정부 차원에서의 협약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담보할 지도 강구되어야 하고, 국가차원의 강제실종방지정책의 수립도 요청된다. 또한 기왕의 인권침해사건에도 협약을 확대하여 적용할 것이 촉구된다. 덧붙여 계속되는 전쟁과 인권유린으로 점철된 21세기 국제사회가 이 협약을 통하여 인권의 보루를 지키고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지 지켜볼 일이다.

<참고문헌>

- 이호중, 「강제실종협약의 가입·비준 관련 국내법적 쟁점」, 『유엔 강제실종협약 관련 쟁점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7.
- 조시현, 「국제법으로 본 공소시효문제」, 『민주법학』 제21호, 2002.
- _____, 「국제인권으로 본 ‘의문사’ 문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학술회의 자료집』, 학술단체협의회, 1999.
- _____,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 유엔 인권위원회 「관타나모 보고서」 읽기」, 『인권평론』 창간호, 2006.
- David Weissbrodt and Amy Bergquist, “Extraordinary Rendition: A Human Rights Analysis”, *Harvard Human Rights Journal*, 제19권, 2006.
- David Weissbrodt and Maria Luisa Bartolomei,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essures: The Case of Argentina, 1976-1983”, *Minnesota Law Review*, 제75권, 1991.
- Dominic McGoldrick, *The Human Rights Committee*, Clarendon Press, 1994.
- Gobind Singh Sethi,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Jurisprudence on Issues of Forced Disappearances”, *Human Rights Brief*, 제8권 제3호, 2001.
- Grace M. Kang, “A Case for the Prosecution of Kim Jong Il for Crimes against Humanity, Genocide, and War Crimes”, *Columbia Human Rights Law Review*, 제38권, 2006.
- Henry J. Steiner & Philip Alst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Context: Law, Politics, Morals*, Clarendon Press, 1996.
- Jo M. Pasqualucci, *The Practice and Procedure of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_____, “The Whol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 Truth Commissions, Impunity and the Inter-American Human Rights System”, *Bosto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Journal*, 제12권, 1994.

- Juan E. Mendez and Jose Miguel Vivanco, “Disappearances and the Inter-American Court: Reflections on a Litigation Experience”, *Hamline Law Review*, 제13권, 1990.
- Kai Ambos, “Impunity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A case study on Colombia, Peru, Bolivia, Chile and Argentina”, *Human Rights Law Journal*, 제18권, 1997.
- M. Cherif Bassiouni,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Victims' Rights”, *Human Rights Law Review*, 제6권, 2006.
- Michael P. Scharf, “The Case for a Permanent International Truth Commission”, *Duke Journal of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Law*, 제7권, 1997.
- Neil J. Kritz 엮음, *Transitional Justice: How Emerging Democracies Reckon with Former Regimes*, 제3권,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1995.
- Nigel S. Rodley, *The Treatment of Prisoners under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제2판, 2000.
- Reed Brody & Felipe González, “Nunca Más: An Analysis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on ‘Disappearances’”, *Human Rights Quarterly*, 제19권, 1997.
- Stephen P. Marks, “The Complaint Procedur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Hurst Hannum 엮음, *Guide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actice*, 2판,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2.
- Thomas Buergenthal, “The United Nations Truth Commission for El Salvador”,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제27권, 1994.
- Terence S. Coonan, “Legal and Theological Reflections on the Task of Making Former Torturers Accountable”,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제20권, 1996.

<Abstrac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Enforced Disappearance and Its Challenges to the Korean Society

Cho, Si-Hyun
Professor, Konkuk Univ.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2006, sets out human rights standards and enforcement mechanisms for the punishment and prevention of enforced disappearances. Enforced disappearance occurs where the State arrests or detains persons while denying its knowledge or refusing to disclose their whereabouts, thereby putting them out of the protection of the law. Enforced disappearance has not been the sole monopoly of past military dictatorships, but is still being committed worldwide as in the War on Terror. The Convention, first of all, confirms the obligation of State Parties not to practice enforced disappearance, requiring them to investigate, punish its perpetrators and make records on detentions. The Convention also affirms the right to know the truth as well as the right to information and reparation of the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 The achievements of the Convention should be pursued in the practice of both international and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ceed to its ratification and take national implementation measures including related criminal legislation. It should also declare the *de facto*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o the events arising before its entry into force.

Key Word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enforced disappearanc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dealing with the past, war on terror, national implementation



발표 2

국제형사법의 시각에서 본 유엔 강제실종협약

김상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국제형사법의 시각에서 본 강제실종협약

국가인권위원회
2019년 12월 11일
김상걸(국가안보전략연구원)

1

강제실종협약, 제2조

“... ‘enforced disappearance’ is considered to be the arrest, detention, abduction or any other form of deprivation of liberty by agents of the State or by persons or groups of persons acting with the authorization, support or acquiescence of the State, followed by a refusal to acknowledge the deprivation of liberty or by concealment of the fate or whereabouts of the disappeared persons, which place such a person outside the protection of law.”

제3조: “shall ... investigate”

제4조: “... an offence under its criminal law”

제5조: “The widespread or systematic practice of enforced disappearance constitutes a crimes against humanity ...”

2

제6조: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정범, 공범, 지휘자책임)

제7조: 형량

제8조: 시효 (“commences ... when the offence of [ED] ceases, taking into account its continuous nature”)

제9조: 관할권(territorial, personal, passive personality principles) +
aut dedere aut judicare principle

제10조~제15조: 범죄인인도 + 형사사법공조 관련 규정들

3

**Crimes against humanity
(ICC Rome Statute, Art. 7)**

1. ... “crime against humanity” means any of the following acts when committed *as part of a widespread or systematic attack directed against any civilian population, with knowledge of the attack:*

- (a) Murder;**
- (b) Extermination;**
- (c) Enslavement;**
- (d) Deportation or forcible transfer of population;**
- (e) Imprisonment;**
- (f) Torture;**
- (g) Rape, sexual slavery, enforced prostitution,**
- (h) Persecution ...**
- (i)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 (j) The crime of apartheid;**
- (k) Other inhumane acts ...**

4

**Crimes against humanity
(ICC Rome Statute, Art. 7)**

2(i):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means the arrest, detention or abduction of persons by, or with the authorization, support or acquiescence of, a State or political organization, followed by a refusal to acknowledge that deprivation of freedom or to give information on the fate or whereabouts of those persons, with the intention of removing them from the protection of the law for a prolonged period of time.

국제형사법의 권위자 故Cassese교수는 이 범죄정의는 현존하는 국제관습법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발아기에 있는 범죄개념을 구체화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함

[국제인권법] 협약상 강제실종 vs. [국제형사법] 로마규정상 강제실종(I)

- 이상과 같이, 제2조(강제실종의 정의)부터 시작하여 제15조까지의 규정들은 마치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기본법인 로마규정의 축소판을 보는 듯한 상당히 형사법적 성격이 짙은 규정들임
-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으로 행해지는’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crime against humanity’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5조를 고려할 때, 협약상 강제실종 범죄 개념은 로마규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형사법상 crime against humanity로서의 강제실종 범죄 개념보다 그 범위가 넓다고 보여짐

[국제인권법] 협약상 강제실종 vs. [국제형사법] 로마규정상 강제실종 (II)

- 즉, 국제형사법상 crime against humanity로서의 강제실종은 반드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성격을 가져야 하나, 협약상 강제실종은 그러한 성격이 없는 경우에도 (각국의 국내형법상) 강제실종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반면에, 협약상 crime against humanity로서의 강제실종은 ‘국가(State)’만 저지를 수 있는 반면, 로마규정 제7조상 강제실종은 ‘국가’ 뿐 아니라 정치적 조직(political organization)’도 저지를 수 있는 점과 관련해서는 로마규정상 강제실종의 개념이 더 넓은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음

7

강제실종 범죄의 연원

- 강제실종 범죄는 나치의 발명품
 - 1941년 나치는 ‘Night and Fog’ 칙령(decree)’를 발표하여 정적을 비밀리에 구금할 수 있게함
 - 이는 ‘밤의 어두움(blackness of the night)’을 이용해 정적들을 ‘흔적없이 사라지게(vanish without a trace)’ 만들고자 한 것임
 -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는 행방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음
 - 뉴렘베르그 국제군사법원의 기본법은 강제실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뉴렘베르그는 독일 장교 Keitel에게 ‘강제실종’ 범죄로 유죄를 선고함

8

Crime against humanity 로서의 강제실종

- 다음의 문서들은 강제실종을 crime against humanity로 규정:
 - 1992년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systematic practice of such acts is of a nature of a crime against humanity”)
 - 1994년 Inter-American Convention on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systematic practice ... constitutes a crime against humanity”)
 - 1996년 유엔국제법위원회 Draft Code of Crimes against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 (Art. 18: Crimes against humanity)
 - 1998년 ICC 로마규정 (Art. 7: Crimes against humanity)
 - 2000년 ICTY Kupreskic 사건 일심판결문 – crime against humanity of ‘other inhumane acts’로서의 강제실종
 - 2006년 강제실종협약 (Art. 5: “the widespread or systematic practice ... constitutes a crime against humanity”)

9

로마규정 제7조상 강제실종 범죄

- 두 가지 행위를 규정
 - 자유의 박탈(deprivation of liberty - arrest, detention or abduction)
 - 거절(refusal to acknowledge 또는 refusal to give information)
- 두 종류의 피해자
 - 실종 당한 본인 (← 자유의 박탈 행위)
 - 가족 (← 거부 행위) - “It is this uncertainty that is the hallmark of enforced disappearance ...” (Cryer et al., p. 264)

10

로마규정 제7조상 강제실종 범죄

- 계속범(continuing crime)의 성격
 - ▶ ‘자유 박탈(deprivation of liberty)’로부터 개시되어 “범죄실행자들이 실종 당한 피해자의 운명이나 소재를 숨기는 동안 ” 실행이 계속되는 성격 → 시효, 공범 등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음

아래에서 ICC Elements of Crimes 상 강제실종의 구성요건에 대해 알아봄.
 로마규정 제9조가 규정하고 있는 Elements of Crimes는 재판부를 구속하지는 않으나 ICC 당사국총회 결의를 통해 채택된 것으로서 상당한 권위를 인정받음

(* element = 구성요건)

Elements

1. The perpetrator:
 - (a) Arrested, detained^{25, 26} or abducted one or more persons; or
 - (b) Refused to acknowledge the arrest, detention or abduction, or to give information on the fate or whereabouts of such person or persons.
2.
 - (a) Such arrest, detention or abduction was followed or accompanied by a refusal to acknowledge that deprivation of freedom or to give information on the fate or whereabouts of such person or persons; or
 - (b) Such refusal was preceded or accompanied by that deprivation of freedom.
3. The perpetrator was aware that:²⁷
 - (a) Such arrest, detention or abduction would be followed in the ordinary course of events by a refusal to acknowledge that deprivation of freedom or to give information on the fate or whereabouts of such person or persons;²⁸ or
 - (b) Such refusal was preceded or accompanied by that deprivation of freedom.

4. Such arrest, detention or abduction was carried out by, or with the authorization, support or acquiescence of, a State or a political organization.
5. Such refusal to acknowledge that deprivation of freedom or to give information on the fate or whereabouts of such person or persons was carried out by, or with the authorization or support of, such State or political organization.
6. The perpetrator intended to remove such person or persons from the protection of the law for a prolonged period of time.
7. The conduct was committed as part of a widespread or systematic attack directed against a civilian population.
8. The perpetrator knew that the conduct was part of or intended the conduct to be part of a widespread or systematic attack directed against a civilian population.

Elements of Crimes 상 강제실종 부분 설명 (I)

- Elements of Crimes가 열거하고 있는 ICC관할권 하의 각종 범죄의 구성요건들 중 강제 실종의 구성요건들은 가장 길고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
- 그 강제실종의 구성요건들은 검사가 입증하기 상당히 힘들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협소한 적용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
- 우선 Element 7과 Element 8은 murder, extermination, enslavement, 등 로마규정 제7조(1)(a)-(k)항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crime against humanity 범죄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contextual element (상황적 구성요건)임
- Crimes against humanity의 상황적 구성요건은 '민간인집단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 인데, 이러한 상황이 존재하고 그 일부로서 murder, extermination, enslavement 등이 실행되어야 각각 crim against humanity를 구성할 수 있음

Elements of Crimes 상 강제실종 부분 설명 (II)

- 위의 slide 5에서 말한 로마규정 제7조(2)(i)의 강제실종범죄의 정의는 system으로서의 강제실종을 구성하기 위한 두 가지 행위(자유박탈행위 + 거절)를 열거함
- Elements of Crimes의 Element 1(a)와 1(b)는 Elements of Crimes의 취지가 구체적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임을 반영하여 그 두 가지 행위가 and 로 연결되는 것이 or로 연결되는 것임을 분명히 함
- 즉, 자유박탈행위만 또는 거절행위만을 행한 자도 Element 2에서 Element 8까지의 여타 Elements들을 만족한다면 처벌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함

15

Elements of Crimes 상 강제실종 부분 설명 (III)

- 이는 일견 직접 자유박탈행위 또는 거절행위를 한 하급행위자도 로마규정 상 제7조의 crime against humanity로서의 강제실종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외견을 제공하지만
- Element 3이 요구하고 있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인식(knowledge)’ 요건 때문에 로마규정 제7조의 crime against humanity로서의 강제실종은 오직 중급 내지 상급행위자에 대해서만 원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Element 3이 요구하고 있는 강제실종의 총체적 system에 대한 ‘인식’은 하급자는 가지기 힘든 것이 때문임

16

Elements of Crimes 상 강제실종 부분 설명 (IV)

- Element 2는 system으로서의 강제실종이 증명되어야 함을 명시함
- 즉, 자유박탈행위 및 거절행위 양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함을 명시함
- 또한 Element 4와 Element 5도 system으로서의 강제실종에 관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정치적 조직'의 관여를 구성요건으로 명시함
- 한편, Element 6는 입증책임을 지는 검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는 요건으로서 국제형사법 상 '특별고의(special intent)'로 분류될 수 있는 주관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17

Elements of Crimes 상 강제실종 부분 설명 (V)

- 이 특별고의는 국제형사법 상 가장 난해한 개념 중의 하나인데, genocide의 핵심구성요건인 genocidal intent, crime against humanity 중 박해(persecution)의 요건인 discriminatory intent, 테러리즘의 요건인 intent to spread terror가 그 예들임
- 일부 전문가들은 강제실종의 특별고의 요건이 검사에게 너무 심한 입증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비판

18

Elements of Crimes 상 강제실종 부분 설명 (VI)

- 일견 Element 6는 개인의 내심의 의사를 규정하고 듯이 보이나 genocidal intent 등에 대한 국제재판소의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이 요건은 집단의 의사 (collective intent)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됨
 - 수단 Darfur사태에 대한 UN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수단정부가 genocidal policy를 추구했는지의 여부로 genocidal intent 요건에 대한 판단을 함
 - 여기서 genocidal policy는 genocidal intent를 집단적 견지에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19

System 성격의 강제실종 범죄

-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강제실종과 연관되어 일어나는 납치, 고문, 살인 등의 fragmented acts가 아닌 '강제실종' 이라는 통합된(unitary) 범죄 그 자체로 기소 및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
- '강제실종' 범죄만이 관련 행위/결과에의 심각성 및 불법성을 가장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그러함

20



부록

부록 1 - 국문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전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국제연합 헌장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고, 세계인권선언을 존중하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그리고 인권, 인도법, 국제형사법 분야의 다른 관련 국제문서들을 상기하고,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1992년 12월 18일 결의 제47/133호로 채택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또한 상기하고, 범죄에 해당함은 물론, 국제법상의 일정한 상황에서는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는 강제 실종의 극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제실종을 방지하며, 강제실종 범죄의 불처벌과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강제실종을 당하지 않을 모든 사람의 권리와 정의와 배상에 대한 희생자들의 권리를 고려하고, 모든 피해자들이 강제실종의 상황과 실종자의 운명에 관한 진실을 알 권리와 이 목적을 위한 정보를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할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여, 다음 조항들에 합의하였다.

제1부

제1조

1. 누구도 강제실종을 당하지 아니한다.
2. 전쟁 또는 전쟁 위협의 상태, 국내적 정치의 불안정 또는 기타 공공의 비상사태 등 어떠한 예외상황이라도 강제실종의 정당화 사유로 주장될 수 없다.

제2조

이 협약의 목적상, “강제실종”이란 국가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묵인 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체포, 감금, 납치 또는 기타 형태의 자유 박탈과, 그에 이어서 자유 박탈의 시인을 거부하거나 실종자의 운명이나 소재를 은폐함으로써, 이러한 사람을 법의 보호 밖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

각 당사국은 국가의 허가, 지원, 묵인 없이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하여 저질러진 제2조에 따른 행위를 수사하고, 책임자를 재판에 회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4조

각 당사국은 강제실종이 지국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되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강제실종의 실행은 현행 국제법에 따른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며, 현행 국제법에 따른 책임을 저야 한다.

제6조

1. 각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형사 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강제실종을 저지르거나, 명령하거나, 권유 또는 교사하거나, 기도하거나, 공범이 되거나, 참여하는 자

나. 다음에 해당하는 상급자

(1) 자신의 실효적인 권한과 통제하에 있는 하급자가 강제실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저지르려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명백히 드러난 해당정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2) 강제실종 범죄와 관련된 행동에 대하여 실효적인 책임과 통제권을 행사하며;

(3) 강제실종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진압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한 내의 필요하고 합당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거나, 수사와 기소를 위해 관할 당국에 사건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다. 위의 나호는 군지휘관이나 실질적으로 군지휘관으로 활동하는 자에 대한 관련 국제법에 따른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을 적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공공당국, 민간, 군대 그 밖의 명령이나 지시는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정당화 사유로 주장될 수 없다.

제7조

1. 각 당사국은 강제실종 범죄를 이의 극도의 심각성을 고려한 적절한 형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가. 강제실종의 범행에 관련되었지만, 특히 강제실종된 자를 구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거나, 강제실종 사건의 내용을 밝힐 수 있게 하거나, 또는 강제실종의 범행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형의 감경
 - 나. 다른 형사절차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면서, 실종자가 사망한 경우나 임신부, 미성년자, 장애인, 그 밖의 취약계층의 강제실종에 대한 가중 처벌

제8조

제5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1. 강제실종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형사절차상 시효 규정이 다음 각 호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가. 공소시효 기간이 길고, 범죄의 극도의 심각성에 비례할 것
 - 나. 강제실종 범죄의 계속적 성격을 고려하여, 이 범죄가 종료된 시점부터 시효를 기산할 것
2. 각 당사국은 공소시효 기간 동안 강제실종 피해자가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9조

1. 당사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가. 범죄가 자국 관할 영역이나, 자국에 등록된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발생한 경우
 - 나. 범죄 용의자가 자국민인 경우
 - 다. 실종자가 자국민이고, 당사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2. 당사국은 범죄 용의자가 자국의 관할 하의 영역에 있다면,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국제적 의무에 따라 용의자를 다른 당사국으로 인도하거나 송환한 경우, 또는 당사국이 관할권을 인정된 국제형사재판소에 용의자를 인도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3. 이 협약은 국내법에 따라 행사되는 어떠한 추가적 형사관할권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1. 입수가능한 정보를 조사한 후 상황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강제실종 범죄를 범한 용의자가 소재하고 있는 당사국은 그를 구금하거나 그 밖에 용의자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 구금 및 그 밖의 법적 조치는 당사국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나, 그 법률은 당사국의 형사절차·관할국에 대한 범죄인인도절차·다른 국가에 용의자를 인도하는 절차에 용의자의 출석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2.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조치를 취한 당사국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예비조사 또는 수사를 즉시 실시한다. 그리고 구금사실 및 구금을 정당화하는 사정을 포함하여 이 조 제1항에 따라 취한 조치와 자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것인가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여 예비 조사 또는 수사의 결과를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에게 통지한다.
3.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구금된 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적절한 본국의 대표자나, 만약 그가 무국적자라면 그가 주로 거주하는 국가의 대표자와 즉시 연락할 수 있다.

제11조

1. 강제실종 범죄를 범한 용의자가 발견된 영토를 관할하는 당사국은 그를 관할국에 범죄인인도하거나, 국제적 의무에 따라 다른 국가로 인도하거나, 당사국이 관할권을 인정한 국제형사재판소에 인도하지 않는 한, 기소를 목적으로 관할기관에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2. 관할기관은 해당 당사국의 국내법상 심각한 성격의 일반 범죄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건에서의 기소와 유죄 평결에 요구되는 증거의 기준은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결코 완화되지 않아야 한다.
3. 강제실종 범죄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모든 사람은 그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공정한 대우를 보장받는다. 강제실종 범죄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설립된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원에 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

제12조

1. 각 당사국은 누군가가 강제실종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어떠한 사람도 이 사실을 관할 기관에 보고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은 그 주장을 즉시 그리고 공정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행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고발인, 증인, 실종자의 친인척, 그의 변호인은 물론 수사에 참여하는 자가 고발 또는 제출된 증거를 이유로 어떠한 부당한 대우나 협박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누군가가 강제실종을 당했다는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기관은 공식적인 고발이 없더라도 수사를 실시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기관에게 다음을 보장한다.
 - 가. 수사와 관련된 서류와 다른 정보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수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과 수단을 갖는다.
 - 나. 어떠한 구금 장소 또는 실종자가 소재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기타 다른 장소에도 출입할 수 있으며, 사법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면 사법기관은 이를 신속하게 결정한다.
4. 각 당사국은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제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특히 고발인, 증인, 실종자의 친인척, 그의 변호인, 또는 수사 참여자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의 압력 또는 행사를 통하여 강제실종 범죄의 용의자가 수사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보장한다.

제13조

1. 당사국간 범죄인인도의 목적상 강제실종 범죄는 정치범이나 정치범과 연관된 범죄 또는 정치적 동기로 유발된 범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같은 범죄에 근거한 범죄인인도 요구는 그러한 이유만으로 거절될 수 없다.
2. 강제실종 범죄는 이 협약이 발효되기 전 당사국 간에 존재하는 모든 범죄인인도 조약에서도 인도가 가능한 범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당사국은 향후 당사국간에 체결되는 범죄인인도 조약 속에 강제실종 범죄를 인도가 가능한 범죄로 포함시킬 것을 약속한다.
4. 조약의 존재를 범죄인 인도의 조건으로 하는 당사국이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한 바 없는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인도 청구를 받았다면, 강제실종 범죄에 관하여는 이 조약을 범죄인인도에 필요한 법적 근거로 간주할 수 있다.
5. 조약의 존재를 범죄인인도의 조건으로 하지 않는 당사국들은 강제실종 범죄를 그들 간의 인도 가능한 범죄로 승인한다.
6. 범죄인인도는 모든 경우에 피청구국의 법률이나 적용 가능한 범죄인인도 조약에 규정된 조건을 따라야 하며, 이에는 특히 범죄인인도에 관한 최저 형기요건과 관련된 조건과 피청구국이 범죄인인도를 거부하거나 이에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된다.
7. 만약 청구가 대상자의 성별, 인종, 종교, 국적, 민족적 출신, 정치적 견해 또는 특정한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그를 기소하거나 처벌할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또는 청구의

이행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를 피청구국이 갖고 있다면, 이 협약상의 어떠한 내용도 범죄인인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4조

1. 당사국은 형사절차에 필요한 자국 재량하의 모든 증거의 제공을 포함하여, 강제실종 범죄에 대하여 제기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최대한의 사법공조를 제공한다.
2. 이 같은 사법공조는 피청구국의 국내법이나 사법공조에 관한 해당 조약상의 조건에 따라야 하며, 이에에는 특히 피청구 당사국이 사법공조의 부여를 거부할 수 있거나 이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와 관련된 조건을 포함한다.

제15조

당사국들은 강제실종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또한 실종자를 수색하고, 소재를 확인하고, 석방시키며, 사망의 경우 유해를 발굴하고, 신원을 확인하고, 반환하는데 있어서 상호 협력하며, 상호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한다.

제16조

1. 어느 당사국도 강제실종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국가로 사람을 추방, 송환(“강제 송환”), 인도 또는 범죄인인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관할기관은 이 같은 근거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되는 경우 관련 국가에서의 지속적인 형태의 중대하거나, 극악하거나, 대규모적인 인권침해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을 포함한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한다.

제17조

1. 어느 누구도 비밀 구금에 처하여지지 아니한다.
2. 자유의 박탈에 관한 당사국의 다른 국제적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각 당사국은 그 국내법에 다음을 행한다.
 - 가. 자유박탈의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다.
 - 나. 자유박탈을 명령할 권한이 있는 기관을 적시한다.
 - 다. 자유를 박탈당한 자는 공식적으로 승인되고 감독되는 자유박탈의 장소에만 수용될 것을 보장한다.

- 라. 자유를 박탈당한 자는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만 규제를 받으면서 그의 가족, 변호인 또는 자신이 선택한 다른 사람과 연락하고 방문 받을 것이 허용되며, 만약 그가 외국인이라면 현행 국제법에 따라 자신의 영사 당국과의 연락이 허용될 것을 보장한다.
 - 마. 만약 필요하다면 사법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서라도, 자유를 박탈 당한 자들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권한 있고, 법적으로 허용된 당국과 기관의 접근을 보장한다.
 - 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자 또는 강제실종이 의심 되는 사건에서는 자유를 박탈당한 자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친인척, 대리인 또는 변호인과 같은 합당한 이해관계자가 법원이 지체 없이 자유박탈의 합법성을 판단하고 만약 그 자유박탈이 합법적이지 아니라면 그의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자유를 박탈당한 자에 관하여 한 개 이상의 최신 공식 등록부와 기록을 축적하고 보존할 것을 보장하며, 이는 요청이 있으면 사법기관 또는 관련 당사국의 법이나 그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관련 국제문서에 의하여 그러한 목적으로 허용받은 다른 관할기관이나 기구에 즉시 제공된다. 이에 수록되는 정보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가. 자유를 박탈당한 자의 신원;
 - 나. 그가 자유를 박탈당한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그의 자유를 박탈한 기관;
 - 다. 자유 박탈을 명령한 기관과 자유 박탈의 근거;
 - 라. 자유 박탈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기관;
 - 마. 자유 박탈의 장소, 자유 박탈의 장소로 입소한 날짜와 시간, 자유 박탈의 장소를 책임지는 기관;
 - 바. 자유를 박탈당한 자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사항;
 - 사. 자유 박탈 도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의 상황과 원인, 그리고 유해의 행선지;
 - 아. 석방 또는 다른 구금 장소로 이송된 날짜와 시간, 행선지, 이송을 책임지는 기관.

제18조

1.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자유를 박탈당한 자의 친인척, 대리인 또는 변호인과 같이 이런 정보에 합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최소한 다음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 가. 자유 박탈을 명령한 기관;
 - 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자유 박탈의 장소에 입소한 날짜, 시간, 장소;

- 다. 자유 박탈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기관,
 - 라.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의 소재, 이에는 또 다른 자유 박탈의 장소로 이송된 경우 그 행선지와 이송을 책임지는 기관을 포함한다;
 - 마. 석방의 날짜와 시간 및 장소;
 - 바. 자유를 박탈당한 자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사항;
 - 사. 자유 박탈 도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의 상황과 원인 그리고 유해의 행선지.
2. 자유를 박탈당한 자와 관련된 정보를 조사한 결과로 인하여 이 조의 제1항에 규정된 자는 물론 조사에 참여한 자가 부당한 대우, 위협 또는 제재를 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1. 의학적, 유전적 정보를 포함하여 실종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집되고 전달되는 개인 정보는 실종자의 수색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거나 제공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것이 강제실종 범죄와 관련한 형사절차나 배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의학적, 유전적 정보를 포함하는 개인 정보의 수집, 처리, 사용, 보관이 개인의 인권, 기본적인 자유 또는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아니된다.

제20조

1. 당사자가 법률의 보호 하에 있고, 자유의 박탈이 사법적 통제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제18조에 규정된 정보에 대한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단 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며, 그 정보의 전달이 당사자의 사생활 또는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범죄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또는 법률에 따른 다른 동등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현행 국제법 및 이 협약의 목적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제2조에서 규정된 행위를 구성한다거나 제17조제1항을 위반하면서 제18조에 규정된 정보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자유 박탈의 합법성 검토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면서, 당사국은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정보를 지체없이 획득할 방안으로서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이러한 구제를 받을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지되거나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21조

각 당사국은 자유를 박탈당한 자가 실제로 석방되었음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석방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석방 시 그들의 신체적 완전성과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능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여야 하며, 이는 그들이 자국법을 준수할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

제6조의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각 당사국은 다음의 행위를 방지하고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가. 제17조제2항 보호와 제20조제2항에 규정된 구제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
- 나. 어떤 자에 대한 자유 박탈을 기록하지 않거나, 공식 기록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함에도 그대로 기록하는 행위;
- 다. 자유 박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법적 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제23조

1.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유를 박탈당하는 자의 구금과 처우에 관여하는 법집행 요원, 민간인 또는 군인, 의료인, 공무원과 기타 사람들의 훈련에 이 협약의 관련 조항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과 정보가 포함되도록 보장한다.
 - 가. 그 같은 요원들이 강제실종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함;
 - 나. 강제실종과 관련하여 예방과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함;
 - 다. 강제실종 사건 해결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을 보장함.
2. 각 당사국은 강제실종을 지시하거나 허가하거나, 조장하는 명령이나 지시가 금지되도록 보장한다. 각 당사국은 이러한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처벌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조의 제1항에서 규정된 사람이 강제실종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예정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자신의 상급자나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나 구제권한을 가진 적절한 기관 또는 기구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한다.

제24조

1. 이 협약의 목적에 따라, ‘피해자란 실종자와 강제실종의 직접적 결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을 의미한다.
2. 각 피해자는 강제실종의 상황과 수사의 경과와 결과, 그리고 실종자의 운명에 관한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이와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각 당사국은 실종자를 수색하고, 위치를 확인하며, 석방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사망 시에는 그 유해를 발견하고, 경의를 표하며, 반환시키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 법제도상 강제실종의 희생자들이 배상을 받고, 신속하고 공정하며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도록 보장한다.
5. 이 조의 제4항에 규정된 배상을 받을 권리에는 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는 물론 적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배상도 포함된다:
 - 가. 원상회복;
 - 나. 재활;
 - 다. 존엄성과 명예의 회복을 포함한 만족;
 - 라. 재발방지의 보장.
6. 종자의 운명이 확인될 때까지 조사를 계속할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각 당사국은 사회복지, 재정문제, 가족법 및 재산권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 그의 운명이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와 그의 친인척들의 법적 상황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7. 각 당사국은 강제실종의 상황과 실종자의 운명을 확인하고 강제실종의 피해자들을 지원하려는 기구나 단체를 자유롭게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

제25조

1. 각 당사국은 다음의 행위를 방지하고 형법상 처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가. 강제실종된 아동, 그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강제실종된 아동 또는 강제실종을 당한 어머니가 감금 도중에 낳은 아동을 불법하게 이동시키는 행위
 - 나. 위 가호에서 언급된 아동들의 정확한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조, 은닉 또는 파기하는 행위
2. 각 당사국은 법절차와 현행 국제조약에 따라 이 조의 제1항 가호에서 언급된 아동을 수색하고, 신원을 확인하며, 그를 원래의 가족에게 돌려보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당사국들은 이 조의 제1항 가호에서 언급된 아동들을 수색하고, 신원을 확인하며, 소재를 찾기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4. 이 조의 제1항 가호에서 언급된 아동들의 최선의 이익을 보고하고, 국적, 성명, 법률적 가족관계를 포함한 그들의 신원을 유지하거나 또는 회복할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을 전제로 하면서, 입양 또는 다른 형태의 아동 소개제도를 인정하는 당사국들은 입양 또는 소개 절차를 재심사하고, 적절한 경우, 강제실종에서 유래된 아동의 입양이나 소개를 무효화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5. 모든 경우에 있어서, 특히 이 조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제1차적 고려사항이 되어야 하며, 자신의 견해를 가질 능력이 있는 아동은 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아동의 견해는 그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적절한 비중으로 인정받는다.

제2부

제26조

1. 이 협약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제실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설립된다.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과 인권 분야에서의 능력을 인정받은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개인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독립적이며 공평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공평한 지역적 배분에 따라 당사국들이 선출한다. 관련 법률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위원회 업무에의 참여와 균형 있는 성별 대표의 유용성이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이 목적을 위하여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에 의하여 2년마다 소집되는 당사국 회의에서 당사국들이 자국민 중에서 추천한 사람들의 명단으로부터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당사국 3분의2를 정족수로 하는 이 회의에서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 대표로부터 가장 많은 득표를 하고, 절대 과반수표를 획득한 사람이 위원회에 선출된다.
3.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 발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실시된다. 각 선거일 4개월 전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에게 3개월 이내에 후보자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낸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각 후보자를 추천한 당사국의 표시와 함께 이렇게 추천된 자를 알파벳 순으로 명단을 준비하여, 이 명단을 모든 당사국에 송부한다.
4. 위원회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그들은 한 번 재선될 수 있다. 그러나 최초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명의 임기는 2년으로 만료된다. 이 다섯 명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 직후 이 조의 제2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장의 추천으로 선정된다.
5.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 사임 또는 다른 이유로 더 이상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그를 추천한 당사국은 이 조의 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그 임기를 담당할 다른 후보를

자국민 중에서 지명하며, 그는 당사국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하여 제시된 지명을 통보 받은 지 6주 이내에 과반수 당사국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위원회는 자체 절차규칙을 제정한다.
7.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과 인력, 시설을 제공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를 소집한다.
8. 위원회의 위원들은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해당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제연합의 임무를 위한 전문가로서의 편의 및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9. 각 당사국은 당사국이 수락한 위원회의 직무 범위 내에서 위원회와 협력하고, 위원들의 임무 수행을 지원한다.

제27조

위원회의 업무를 평가하고 또한 제28조에서 제36조까지 규정된 직무에 따른 협약의 감독기능을,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제44조제2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양도하는 것이 적절한지 결정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발효 후 4년 이후, 6년 이내에 당사국 회의가 개최된다.

제28조

1. 이 협약에 의해 부여된 권한 내에서 위원회는 국제연합의 모든 관련 기관, 사무소, 전문기구, 기금, 국제조약에 의해 설치된 조약기구, 국제연합의 특별절차, 관련 지역적 정부간 기구는 물론 강제실종 방지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모든 국가 기관, 기구 또는 사무소와 협력한다.
2. 위원회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국제인권문서에 의해 설립된 다른 조약기구, 특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해 설립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이하 '자유권규약위원회')와 각각의 견해와 권고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29조

1. 각 당사국은 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내에 협약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취해진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 이 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논평, 견해 또는 권고를 한다. 이 논평, 견해 또는 권고는 해당 당사국에 전달되며, 관련 당사국은 스스로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에 답변할 수 있다.
4.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들에게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추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

1. 실종자를 수색하고 발견하여야 한다는 요청은 실종자의 친인척, 그의 법률상 대리인, 변호인 또는 그들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물론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사람에 의하여 긴급 사안으로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다.
2. 위원회가 이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긴급조치의 요청이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보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한 시한 내에 해당 당사국에게 찾는 사람들의 상황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한다.
 - 가. 명백하게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님
 - 나. 그러한 요청 제출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다.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 경우,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는 기관과 같은 해당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이미 적절히 제출되었음
 - 라. 이 협약의 조항들과 충돌하지 아니함
 - 마. 동일한 문제가 같은 성격의 다른 국제적 조사 절차 또는 분쟁해결 절차에 의하여 조사되고 있지 않음
3. 이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에 비추어, 위원회는 상황의 긴박성을 감안하여 당사국이 이 협약에 따라 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보호하고, 구체적 시한 내에 취한 조치를 위원회에 통보하기 위한 잠정조치를 비롯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요청을 담은 권고를 당사국에 제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긴급조치 요청을 제출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권고내용과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가 입수되면 이를 알려준다.
4. 위원회는 찾는 사람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하는 한, 해당 당사국과의 협력 노력을 계속한다. 요청을 제기한 사람에게는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31조

1. 당사국은 협약 비준시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라도 자국 관할권 하의 개인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부터 당사국에 의한 협약 위반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진정을 접수하고 심리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을 승인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선언을 하지 않은 당사국에 관한 어떠한 진정도 접수하지 아니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진정을 심리할 수 없다.
 - 가. 진정이 익명인 경우
 - 나. 진정이 그러한 진정을 제출할 권리의 남용이거나, 이 협약의 조항들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
 - 다. 동일한 문제가 같은 성격의 다른 국제적 조사 또는 분쟁해결 절차에 의하여 조사되고 있는 경우
 - 라. 모든 실효성 있고 이용가능한 국내 구제수단을 소진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구제의 적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원회가 진정이 이 조의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게 진정을 전달하고, 당사국은 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견해와 논평을 제출하라고 요청한다.
4. 진정을 접수한 이후 본안 결정이 내려지기 전 어느 시점에라도, 위원회는 당사국이 위반 혐의에 따른 피해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요청을 관련 당사국에게 긴급 고려사항으로 전달할 수 있다. 위원회가 재량을 발동하는 것은 해당 진정의 심리적격이나 본안에 대한 결정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5. 위원회가 이 조에 의한 진정을 심리할 때는 비공개 회의로 한다.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이 제출한 응답을 진정인에게 알려준다. 위원회가 그 절차의 종료를 결정하면, 당사국과 진정인에게 위원회의 견해를 전달한다.

제32조

이 협약의 당사국은 또 다른 당사국 이 협약상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진정을 수리하고 심리할 위원회의 권한을 승인한다는 선언을 언제라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선언을 하지 않은 당사국에 관한 통보를 수리할 수 없으며, 또한 그러한 선언을 하지 않은 당사국으로부터의 통보도 수리할 수 없다.

제33조

1. 위원회가 어떤 당사국이 이 협약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알리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당사국과 협의한 후 1명 이상의 위원에게 지체 없이 당사국을 방문하고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대표단 구성과 방문 목적 등을 명시하여 방문하려는 의사를 해당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해당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위원회에 답변한다.

3. 당사국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는 방문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4. 당사국이 그 방문에 동의하면, 위원회와 관련 당사국은 방문 형식을 함께 정하고, 당사국은 그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게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5. 방문 이후 위원회는 해당 당사국에게 위원회의 견해와 권고를 통보한다.

제34조

위원회가 당사국의 관할 하의 영토 내에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강제실종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의 징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보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당사국으로부터 그 상황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요구한 다음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를 긴급히 환기할 수 있다.

제35조

1. 위원회는 이 협약의 발효 후에 발생한 강제실종에 관하여만 권한을 가진다.
2. 어떤 국가가 이 협약 발효 후에 당사국이 되는 경우, 그 국가의 위원회에 대한 의무는 해당 당사국에 대해 이 협약이 발효된 이후에 발생한 강제실종에만 적용된다.

제36조

1. 위원회는 이 협약에 따른 자신의 연례 활동보고서를 당사국들과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한다.
2. 어느 당사국에 대한 견해가 연례보고서에 공표되기 전에, 해당 당사국은 미리 통지를 받으며, 답변을 위한 합리적인 시간이 주어진다. 그 당사국은 자신의 논평이나 견해를 보고서에 공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부

제37조

이 협약은 강제 실종으로부터의 보호에 보다 도움이 되는 어떠한 조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 조항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가. 각 당사국의 법;
- 나. 그 국가에 구속력을 갖는 국제법

제38조

1. 이 협약은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의 비준 대상이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협약은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한다.

제39조

1.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발효한다.
2.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이후 이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하는 국가의 경우, 이 협약은 해당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30일 이후 발효한다.

제40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이 협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한다.

- 가. 제38조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 나. 제39조에 따른 이 협약의 발효일.

제41조

이 협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도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42조

1.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둘 이상의 당사국 사이의 분쟁이 교섭 또는 이 협약에 명시된 절차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분쟁당사자 중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중재재판에 회부된다. 만약 중재재판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사국들이 중재재판의 구성을 합의할 수 없다면, 분쟁당사국 중 일방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2. 이 협약에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 국가는 이 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을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을 한 당사국에 관하여는 다른 당사국도 이 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2항에 따른 선언을 한 모든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통지함으로써 그 선언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43조

이 협약은 1949년 8월 12일자 4개 제네바협약과 1977년 6월 8일자 2개 추가의정서의 당사국의 의무를 포함하는 국제인도법의 규정이나, 국제인도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상황속의 구금 장소를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방문하도록 당사국이 허가할 수 있는 기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4조

1. 이 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개정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심의하고 표결할 당사국회의를 개최하는데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의 요청과 함께 제안된 개정안을 이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해당 송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최소 3분의 1의 당사국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후원 하에 이 회의를 소집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 3분의 2의 다수결로 채택된 개정안을 모든 당사국들에게 수락받기 위하여 제출한다.
3. 이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이 협약 당사국 3분의 2가 각자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이를 수락하는 때에 발효한다.
4. 개정이 발효되면, 이는 이를 수락한 당사국만을 구속하며, 다른 당사국들은 이 협약의 규정과 그들이 수락한 이전의 개정에 계속 구속을 받는다.

제45조

1. 이 협약은 아랍어·중국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제38조에 규정된 모든 국가들에 송부한다.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0 December 2006

[on the report of the Third Committee (A/61/448 and Corr.2)]

61/177.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The General Assembly,

Taking note of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1 of 29 June 2006,¹⁾ by which the Council adopte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1. *Acknowledges* the adoption by the Human Rights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2. *Adopts* and opens for signature, ratification and accessio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the text of which is annexed to the present resolution;
3. *Recommends* that the Convention be opened for signature at a signing ceremony in Paris.

*82nd plenary meeting
20 December 2006*

Annex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Preamble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Considering the obligation of States under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o promote

1) See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Sixty-first Session, Supplement No. 53 (A/61/53)*, part one, chap. II, sect. A.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Having regard to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Recalling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in the fields of human rights,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Also recalling the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in its resolution 47/133 of 18 December 1992,

Aware of the extreme seriousness of enforced disappearance, which constitutes a crime and, in certain circumstances defined in international law, a crime against humanity,

Determined to prevent enforced disappearances and to combat impunity for the crime of enforced disappearance,

Considering the right of any person not to be subjected to enforced disappearance, the right of victims to justice and to reparation,

Affirming the right of any victim to know the truth about the circumstances of an enforced disappearance and the fate of the disappeared person, and the right to freedom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to this end,

Have agreed on the following articles:

Part I

Article 1

1.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enforced disappearance.
2. No exceptional circumstances whatsoever, whether a state of war or a threat of war, internal political instability or any other public emergency, may be invoked as a justification for enforced disappearance.

Article 2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enforced disappearance” is considered to be the arrest, detention, abduction or any other form of deprivation of liberty by agents of the

State or by persons or groups of persons acting with the authorization, support or acquiescence of the State, followed by a refusal to acknowledge the deprivation of liberty or by concealment of the fate or whereabouts of the disappeared person, which place such a person outside the protection of the law.

Article 3

Each State Party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investigate acts defined in article 2 committed by persons or groups of persons acting without the authorization, support or acquiescence of the State and to bring those responsible to justice.

Article 4

Each State Party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enforced disappearance constitutes an offence under its criminal law.

Article 5

The widespread or systematic practice of enforced disappearance constitutes a crime against humanity as defined in applicable international law and shall attract the consequences provided for under such applicable international law.

Article 6

1. Each State Party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hold criminally responsible at least:
 - (a) Any person who commits, orders, solicits or induces the commission of, attempts to commit, is an accomplice to or participates in an enforced disappearance;
 - (b) A superior who:
 - (i) Knew, or consciously disregarded information which clearly indicated, that subordinates under his or her effective authority and control were committing or about to commit a crime of enforced disappearance;
 - (ii) Exercised effective responsibility for and control over activities which were concerned with the crime of enforced disappearance; and
 - (iii) Failed to take all necessary and reasonable measures within his or her power to

prevent or repress the commission of an enforced disappearance or to submit the matter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for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 (c) Subparagraph (b) above is without prejudice to the higher standards of responsibility applicable under relevant international law to a military commander or to a person effectively acting as a military commander.

2. No order or instruction from any public authority, civilian, military or other, may be invoked to justify an offence of enforced disappearance.

Article 7

1. Each State Party shall make the offence of enforced disappearance punishable by appropriate penalties which take into account its extreme seriousness.
2. Each State Party may establish:
 - (a) Mitigating circumstances, in particular for persons who, having been implicated in the commission of an enforced disappearance, effectively contribute to bringing the disappeared person forward alive or make it possible to clarify cases of enforced disappearance or to identify the perpetrators of an enforced disappearance;
 - (b) Without prejudice to other criminal procedures, aggravating circumstances, in particular in the event of the death of the disappeared person or the commission of an enforced disappearance in respect of pregnant women, minors, persons with disabilities or other particularly vulnerable persons.

Article 8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5,

1. A State Party which applies a statute of limitations in respect of enforced disappearance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the term of limitation for criminal proceedings:
 - (a) Is of long duration and is proportionate to the extreme seriousness of this offence;
 - (b) Commences from the moment when the offence of enforced disappearance ceases, taking into account its continuous nature.
2. Each State Party shall guarantee the right of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 to an

effective remedy during the term of limitation.

Article 9

1. Each State Party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stablish its competence to exercise jurisdiction over the offence of enforced disappearance:
 - (a) When the offence is committed in any territory under its jurisdiction or on board a ship or aircraft registered in that State;
 - (b) When the alleged offender is one of its nationals;
 - (c) When the disappeared person is one of its nationals and the State Party considers it appropriate.
2. Each State Party shall likewise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its competence to exercise jurisdiction over the offence of enforced disappearance when the alleged offender is present in any territory under its jurisdiction, unless it extradites or surrenders him or her to another State in accordance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or surrenders him or her to an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whose jurisdiction it has recognized.
3. This Convention does not exclude any additional criminal jurisdiction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rticle 10

1. Upon being satisfied, after an examination of the information available to it, that the circumstances so warrant, any State Party in whose territory a person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 of enforced disappearance is present shall take him or her into custody or take such other legal measures as are necessary to ensure his or her presence. The custody and other legal measures shall be as provided for in the law of that State Party but may be maintained only for such time as is necessary to ensure the person's presence at criminal, surrender or extradition proceedings.
2. A State Party which has taken the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immediately carry out a preliminary inquiry or investigations to establish the facts. It shall notify the States Parties referred to in article 9, paragraph 1, of the measures it has

taken in pursuance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ncluding detention and the circumstances warranting detention, and of the findings of its preliminary inquiry or its investigations, indicating whether it intends to exercise its jurisdiction.

3. Any person in custody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communicate immediately with the nearest appropriate representative of the State of which he or she is a national, or, if he or she is a stateless person, with the representative of the State where he or she usually resides.

Article 11

1. The State Party in the territory under whose jurisdiction a person alleged to have committed an offence of enforced disappearance is found shall, if it does not extradite that person or surrender him or her to another State in accordance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or surrender him or her to an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whose jurisdiction it has recognized, submit the case to its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pose of prosecution.
2. These authorities shall take their decision in the same manner as in the case of any ordinary offence of a serious nature under the law of that State Party. In the cases referred to in article 9, paragraph 2, the standards of evidence required for prosecution and conviction shall in no way be less stringent than those which apply in the cases referred to in article 9, paragraph 1.
3. Any person against whom proceedings are brought in connection with an offence of enforced disappearance shall be guaranteed fair treatment at all stages of the proceedings. Any person tried for an offence of enforced disappearance shall benefit from a fair trial before a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court or tribunal established by law.

Article 12

1. Each State Party shall ensure that any individual who alleges that a person has been subjected to enforced disappearance has the right to report the facts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which shall examine the allegation promptly and impartially and, where necessary, undertake without delay a thorough and impartial investigation. Appropriate

- steps shall be taken, where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complainant, witnesses, relatives of the disappeared person and their defence counsel, as well as persons participating in the investigation, are protected against all ill-treatment or intimidation as a consequence of the complaint or any evidence given.
2. Where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for believing that a person has been subjected to enforced disappearance, the authori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undertake an investigation, even if there has been no formal complaint.
 3. Each State Party shall ensure that the authori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 (a) Have the necessary powers and resources to conduct the investigation effectively, including access to the documentation and other information relevant to their investigation;
 - (b) Have access, if necessary with the prior authorization of a judicial authority, which shall rule promptly on the matter, to any place of detention or any other place where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disappeared person may be present.
 4. Each State Party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and sanction acts that hinder the conduct of an investigation. It shall ensure in particular that persons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 of enforced disappearance are not in a position to influence the progress of an investigation by means of pressure or acts of intimidation or reprisal aimed at the complainant, witnesses, relatives of the disappeared person or their defence counsel, or at persons participating in the investigation.

Article 13

1. For the purposes of extradition between States Parties, the offence of enforced disappearance shall not be regarded as a political offence or as an offence connected with a political offence or as an offence inspired by political motives. Accordingly, a request for extradition based on such an offence may not be refused on these grounds alone.
2. The offence of enforced disappearance shall be deemed to be included as an extraditable offence in any extradition treaty existing between States Parties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3. States Parties undertake to include the offence of enforced disappearance as an

extraditable offence in any extradition treaty subsequently to be concluded between them.

4. If a State Party which makes extradition conditional on the existence of a treaty receives a request for extradition from another State Party with which it has no extradition treaty, it may consider this Convention as the necessary legal basis for extradition in respect of the offence of enforced disappearance.
5. States Parties which do not make extradition conditional on the existence of a treaty shall recognize the offence of enforced disappearance as an extraditable offence between themselves.
6. Extradition shall, in all cases, be subject to the conditions provided for by the law of the requested State Party or by applicable extradition treaties, including, in particular, conditions relating to the minimum penalty requirement for extradition and the grounds upon which the requested State Party may refuse extradition or make it subject to certain conditions.
7.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be interpreted as imposing an obligation to extradite if the requested State Party has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request has been made for the purpose of prosecuting or punishing a person on account of that person's sex, race, religion, nationality, ethnic origin, political opinions or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that compliance with the request would cause harm to that person for any one of these reasons.

Article 14

1. States Parties shall afford one another the greatest measure of mutual legal assistance in connection with criminal proceedings brought in respect of an offence of enforced disappearance, including the supply of all evidence at their disposal that is necessary for the proceedings.
2. Such mutual legal assistance shall be subject to the conditions provided for by the domestic law of the requested State Party or by applicable treaties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cluding, in particular, the conditions in relation to the grounds upon which the requested State Party may refuse to grant mutual legal assistance or may make it subject to conditions.

Article 15

States Parties shall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shall afford one another the greatest measure of mutual assistance with a view to assisting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 and in searching for, locating and releasing disappeared persons and, in the event of death, in exhuming and identifying them and returning their remains.

Article 16

1. No State Party shall expel, return (“refouler”), surrender or extradite a person to another State where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he or she would be in danger of being subjected to enforced disappearance.
2.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whether there are such grounds,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take into account all relevant considerations, including, where applicable, the existence in the State concerned of a consistent pattern of gross, flagrant or ma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or of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rticle 17

1. No one shall be held in secret detention.
2. Without prejudice to other international obligations of the State Party with regard to the deprivation of liberty, each State Party shall, in its legislation:
 - (a) Establish the conditions under which orders of deprivation of liberty may be given;
 - (b) Indicate those authorities authorized to order the deprivation of liberty;
 - (c) Guarantee that any person deprived of liberty shall be held solely in officially recognized and supervised places of deprivation of liberty;
 - (d) Guarantee that any person deprived of liberty shall be authorized to communicate with and be visited by his or her family, counsel or any other person of his or her choice, subject only to the conditions established by law, or, if he or she is a foreigner, to communicate with his or her consular authorities,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international law;
 - (e) Guarantee access by the competent and legally authorized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to the places where persons are deprived of liberty, if necessary with

prior authorization from a judicial authority;

- (f) Guarantee that any person deprived of liberty or, in the case of a suspected enforced disappearance, since the person deprived of liberty is not able to exercise this right, any persons with a legitimate interest, such as relatives of the person deprived of liberty, their representatives or their counsel, shall, in all circumstances, be entitled to take proceedings before a court, in order that the court may decide without delay on the lawfulness of the deprivation of liberty and order the person's release if such deprivation of liberty is not lawful.
3. Each State Party shall assure the compilation and maintenance of one or more up-to-date official registers and/or records of persons deprived of liberty, which shall be made promptly available, upon request, to any judicial or other competent authority or institution authorized for that purpose by the law of the State Party concerned or any relevant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to which the State concerned is a party. Th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shall include, as a minimum:
- (a) The identity of the person deprived of liberty;
 - (b) The date, time and place where the person was deprived of liberty and the identity of the authority that deprived the person of liberty;
 - (c) The authority that ordered the deprivation of liberty and the grounds for the deprivation of liberty;
 - (d) The authority responsible for supervising the deprivation of liberty;
 - (e) The place of deprivation of liberty, the date and time of admission to the place of deprivation of liberty and the authority responsible for the place of deprivation of liberty;
 - (f) Elements relating to the state of health of the person deprived of liberty;
 - (g) In the event of death during the deprivation of liberty, the circumstances and cause of death and the destination of the remains;
 - (h) The date and time of release or transfer to another place of detention, the destination and the authority responsible for the transfer.

Article 18

1. Subject to articles 19 and 20, each State Party shall guarantee to any person with a legitimate interest in this information, such as relatives of the person deprived of liberty, their representatives or their counsel, access to at least the following information:
 - (a) The authority that ordered the deprivation of liberty;
 - (b) The date, time and place where the person was deprived of liberty and admitted to the place of deprivation of liberty;
 - (c) The authority responsible for supervising the deprivation of liberty;
 - (d) The whereabouts of the person deprived of liberty, including, in the event of a transfer to another place of deprivation of liberty, the destination and the authority responsible for the transfer;
 - (e) The date, time and place of release;
 - (f) Elements relating to the state of health of the person deprived of liberty;
 - (g) In the event of death during the deprivation of liberty, the circumstances and cause of death and the destination of the remains.
2. Appropriate measures shall be taken, where necessary, to protect the pers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s well as persons participating in the investigation, from any ill-treatment, intimidation or sanction as a result of the search for information concerning a person deprived of liberty.

Article 19

1.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medical and genetic data, which is collected and/or transmitt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earch for a disappeared person shall not be used or made available for purposes other than the search for the disappeared person. This is without prejudice to the use of such information in criminal proceedings relating to an offence of enforced disappearance or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obtain reparation.
2. The collection, processing, use and storage of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medical and genetic data, shall not infringe or have the effect of infringing the human rights, fundamental freedoms or human dignity of an individual.

Article 20

1. Only where a person is under the protection of the law and the deprivation of liberty is subject to judicial control may the right to information referred to in article 18 be restricted, on an exceptional basis, where strictly necessary and where provided for by law, and if the transmission of the information would adversely affect the privacy or safety of the person, hinder a criminal investigation, or for other equivalent reasons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in conformity with applicable international law and with the objectives of this Convention. In no case shall there be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information referred to in article 18 that could constitute conduct defined in article 2 or be in violation of article 17, paragraph 1.
2. Without prejudice to consideration of the lawfulness of the deprivation of a person's liberty, States Parties shall guarantee to the persons referred to in article 18, paragraph 1, the right to a prompt and effective judicial remedy as a means of obtaining without delay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article 18, paragraph 1. This right to a remedy may not be suspended or restricted in any circumstances.

Article 21

Each State Party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persons deprived of liberty are released in a manner permitting reliable verification that they have actually been released. Each State Party shall also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assure the physical integrity of such persons and their ability to exercise fully their rights at the time of release, without prejudice to any obligations to which such persons may be subject under national law.

Article 22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6, each State Party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and impose sanctions for the following conduct:

- (a) Delaying or obstructing the remedies referred to in article 17, paragraph 2 (f), and article 20, paragraph 2;
- (b) Failure to record the deprivation of liberty of any person, or the recording of any information which the official responsible for the official register knew or should have

known to be inaccurate;

- (c) Refusal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deprivation of liberty of a person, or the provision of inaccurate information, even though the legal requirements for providing such information have been met.

Article 23

1. Each State Party shall ensure that the training of law enforcement personnel, civil or military, medical personnel, public officials and other persons who may be involved in the custody or treatment of any person deprived of liberty includes the necessary education and information regard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in order to:
 - (a) Prevent the involvement of such officials in enforced disappearances;
 - (b)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revention and investigations in relation to enforced disappearances;
 - (c) Ensure that the urgent need to resolve cases of enforced disappearance is recognized.
2. Each State Party shall ensure that orders or instructions prescribing, authorizing or encouraging enforced disappearance are prohibited. Each State Party shall guarantee that a person who refuses to obey such an order will not be punished.
3. Each State Party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the pers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who have reason to believe that an enforced disappearance has occurred or is planned report the matter to their superiors and, where necessary, to the appropriate authorities or bodies vested with powers of review or remedy.

Article 24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victim” means the disappeared person and any individual who has suffered harm as the direct result of an enforced disappearance.
2. Each victim has the right to know the truth regarding the circumstances of the enforced disappearance, the progress and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fate of the disappeared person. Each State Party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in this regard.
3. Each State Party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search for, locate and release

- disappeared persons and, in the event of death, to locate, respect and return their remains.
4. Each State Party shall ensure in its legal system that the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 have the right to obtain reparation and prompt, fair and adequate compensation.
 5. The right to obtain repar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covers material and moral damages and, where appropriate, other forms of reparation such as:
 - (a) Restitution;
 - (b) Rehabilitation;
 - (c) Satisfaction, including restoration of dignity and reputation;
 - (d) Guarantees of non-repetition.
 6. Without prejudice to the obligation to continue the investigation until the fate of the disappeared person has been clarified, each State Party shall take the appropriate steps with regard to the legal situation of disappeared persons whose fate has not been clarified and that of their relatives, in fields such as social welfare, financial matters, family law and property rights.
 7. Each State Party shall guarantee the right to form and participate freely in organizations and associations concerned with attempting to establish the circumstances of enforced disappearances and the fate of disappeared persons, and to assist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

Article 25

1. Each State Party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and punish under its criminal law:
 - (a) The wrongful removal of children who are subjected to enforced disappearance, children whose father, mother or legal guardian is subjected to enforced disappearance or children born during the captivity of a mother subjected to enforced disappearance;
 - (b) The falsification, concealment or destruction of documents attesting to the true identity of the childre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above.

2. Each State Party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search for and identify the children referred to in paragraph 1 (a) of this article and to return them to their families of origin, in accordance with legal procedures and applicable international agreements.
3. States Parties shall assist one another in searching for, identifying and locating the children referred to in paragraph 1 (a) of this article.
4. Given the need to protec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ren referred to in paragraph 1 (a) of this article and their right to preserve, or to have re-established, their identity, including their nationality, name and family relations as recognized by law, States Parties which recognize a system of adoption or other form of placement of children shall have legal procedures in place to review the adoption or placement procedure, and, where appropriate, to annul any adoption or placement of children that originated in an enforced disappearance.
5. In all cases, and in particular in all matters relating to this article,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be a primary consideration, and a child who is capable of forming his or her own views shall have the right to express those views freely, the views of the child being given due weight in accordance with the age and maturity of the child.

Part II

Article 26

1. A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to carry out the functions provided for under this Convention. The Committee shall consist of ten experts of high moral character and recognized competenc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who shall serve in their personal capacity and be independent and impartial.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the States Parties according to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Due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usefulness of the participation in the work of the Committee of persons having relevant legal experience and of balanced gender representation.
2.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secret ballot from a list of persons nominated by States Parties from among their nationals, at biennial meetings of the States Parties conven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for this purpose.

At those meetings, for which two thirds of the States Parties shall constitute a quorum, the persons elected to the Committee shall be those who obtain the largest number of votes and an absolute majority of the votes of the representatives of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3. The initial election shall be held no later than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Four months before the date of each election,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address a letter to the States Parties inviting them to submit nominations within three months. The Secretary-General shall prepare a list in alphabetical order of all persons thus nominated, indicating the State Party which nominated each candidate, and shall submit this list to all States Parties.
4.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for a term of four years. They shall be eligible for re-election once. However, the term of five of the members elected at the first election shall expire at the end of two years; immediately after the first election, the names of these five members shall be chosen by lot by the chairman of the meeting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5. If a member of the Committee dies or resigns or for any other reason can no longer perform his or her Committee duties, the State Party which nominated him or her shall,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set out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ppoint another candidate from among its nationals to serve out his or her term,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Such approval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obtained unless half or more of the States Parties respond negatively within six weeks of having been inform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proposed appointment.
6. The Committee shall establish its own rules of procedure.
7.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provide the Committee with the necessary means, staff and facilities for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its function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convene the initial meeting of the Committee.
8.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ntitled to the facilities,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experts on mission for the United Nations, as laid down in the relevant sect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United Nations.

9. Each State Party shall cooperate with the Committee and assist its members in the fulfilment of their mandate, to the extent of the Committee's functions that the State Party has accepted.

Article 27

A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will take place at the earliest four years and at the latest six years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to evaluate the functioning of the Committee and to decid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described in article 44, paragraph 2,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transfer to another body — without excluding any possibility — the monitoring of this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the functions defined in articles 28 to 36.

Article 28

1. In the framework of the competencies granted by this Convention, the Committee shall cooperate with all relevant organs, offices and specialized agencies and funds of the United Nations, with the treaty bodies instituted by international instruments, with the special procedures of the United Nations and with the relevant reg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or bodies, as well as with all relevant State institutions, agencies or offices working towards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against enforced disappearances.
2. As it discharges its mandate, the Committee shall consult other treaty bodies instituted by releva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in particular the Human Rights Committee instituted by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with a view to ensuring the consistency of their respective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Article 29

1. Each State Party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 throug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 report on the measures taken to give effect to its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within two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for the State Party concerned.
2.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make this report available to all States Parties.

3. Each report shall be considered by the Committee, which shall issue such comments, observations or recommendations as it may deem appropriate. The comments, observations or recommendations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State Party concerned, which may respond to them, on its own initiative or at the request of the Committee.
4. The Committee may also request States Parties to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Article 30

1. A request that a disappeared person should be sought and found may be submitted to the Committee, as a matter of urgency, by relatives of the disappeared person or their legal representatives, their counsel or any person authorized by them, as well as by any other person having a legitimate interest.
2. If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a request for urgent action submitted in pursuance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 (a) Is not manifestly unfounded;
 - (b) Does not constitute an abuse of the right of submission of such requests;
 - (c) Has already been duly presented to the competent bodies of the State Party concerned, such as those authorized to undertake investigations, where such a possibility exists;
 - (d) Is not incompatibl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 (e) The same matter is not being examined under another procedure of international investigation or settlement of the same nature;

it shall request the State Party concerned to provide it with information on the situation of the persons sought, within a time limit set by the Committee.

3. In the light of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tate Party concern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Committee may transmit recommendations to the State Party, including a request that the State Party should take all the necessary measures, including interim measures, to locate and protect the person concerne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and to inform the Committee, within a specified period of time, of measures taken, taking into account the urgency of the situation. The Committee shall

inform the person submitting the urgent action request of its recommendations and of the information provided to it by the State as it becomes available.

4. The Committee shall continue its efforts to work with the State Party concerned for as long as the fate of the person sought remains unresolved. The person presenting the request shall be kept informed.

Article 31

1. A State Party may at the time of ratification of this Convention or at any time afterwards declare that it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from or on behalf of individuals subject to its jurisdiction claiming to be victims of a violation by this State Party of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Committee shall not admit any communication concerning a State Party which has not made such a declaration.
2. The Committee shall consider a communication inadmissible where:
 - (a) The communication is anonymous;
 - (b) The communication constitutes an abuse of the right of submission of such communications or is incompatibl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 (c) The same matter is being examined under another procedure of international investigation or settlement of the same nature; or where
 - (d) All effective available domestic remedies have not been exhausted. This rule shall not apply where the application of the remedies is unreasonably prolonged.
3. If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e communication meets the requirements set out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it shall transmit the communication to the State Party concerned, requesting it to provide observations and comments within a time limit set by the Committee.
4. At any time after the receipt of a communication and before a determination on the merits has been reached, the Committee may transmit to the State Party concerned for its urgent consideration a request that the State Party will take such interim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avoid possible irreparable damage to the victims of the alleged violation. Where the Committee exercises its discretion, this does not imply a determination

on admissibility or on the merits of the communication.

5. The Committee shall hold closed meetings when examining communications under the present article. It shall inform the author of a communication of the responses provided by the State Party concerned. When the Committee decides to finalize the procedure, it shall communicate its views to the State Party and to the author of the communication.

Article 32

A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may at any time declare that it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in which a State Party claims that another State Party is not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The Committee shall not receive communications concerning a State Party which has not made such a declaration, nor communications from a State Party which has not made such a declaration.

Article 33

1. If the Committee receives reliable information indicating that a State Party is seriously violating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it ma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tate Party concerned, request one or more of its members to undertake a visit and report back to it without delay.
2. The Committee shall notify the State Party concerned, in writing, of its intention to organize a visit, indicating the composition of the delegation and the purpose of the visit. The State Party shall answer the Committee within a reasonable time.
3. Upon a substantiated request by the State Party, the Committee may decide to postpone or cancel its visit.
4. If the State Party agrees to the visit, the Committee and the State Party concerned shall work together to define the modalities of the visit and the State Party shall provide the Committee with all the facilities needed for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visit.
5. Following its visit, the Committee shall communicate to the State Party concerned its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Article 34

If the Committee receives information which appears to it to contain well-founded indications that enforced disappearance is being practised on a widespread or systematic basis in the territory under the jurisdiction of a State Party, it may, after seeking from the State Party concerned all relevant information on the situation, urgently bring the matter to the attention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throug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35

1. The Committee shall have competence solely in respect of enforced disappearances which commenced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2. If a State becomes a party to this Convention after its entry into force, the obligations of that State vis-à-vis the Committee shall relate only to enforced disappearances which commenced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for the State concerned.

Article 36

1. The Committee shall submit an annual report on its activities under this Convention to the States Parties and to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2. Before an observation on a State Party is published in the annual report, the State Party concerned shall be informed in advance and shall be given reasonable time to answer. This State Party may request the publication of its comments or observations in the report.

Part III

Article 37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any provisions which are more conducive to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and which may be contained in:

- (a) The law of a State Party;
- (b) International law in force for that State.

Article 38

1. This Convention is open for signature by all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2. This Convention is subject to ratification by all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3. This Convention is open to accession by all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Article 39

1.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depos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twen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2. For each State ratifying or acceding to this Convention after the deposit of the twen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that State'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rticle 40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notify all State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all States which have signed or acceded to this Convention of the following:

- (a) Signatures, ratifications and accessions under article 38;
- (b)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under article 39.

Article 41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all parts of federal States without any limitations or exceptions.

Article 42

1. Any dispute between two or more States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which cannot be settled through negotiation or by the procedures expressly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shall, at the request of one of them, be submitted to arbitration. If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request for arbitration the Parties are unable to agree on the organization of the arbitration, any one of those Parties may refer the disput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by request in conformity with the Statute of the Court.
2. A State may, at the time of signature or ratification of this Convention or accession thereto, declare that it does not consider itself bound by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other States Parties shall not be bound by paragraph 1 of this article with respect to any State Party having made such a declaration.
3. Any State Party having made a decla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may at any time withdraw this declaration by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43

This Convention is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cluding the obligations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o the four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the two Additional Protocols thereto of 8 June 1977, or to the opportunity available to any State Party to authorize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to visit places of detention in situations not covered b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rticle 44

1. Any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may propose an amendment and file 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shall thereupon communicate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with a request that they indicate whether they favour a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and voting upon the proposal. In the event that within four months from the date of such communication at least one third of the States Parties

- favour such a conference, the Secretary-General shall convene the conference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2. Any amendment adopted by a majority of two thirds of the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at the conference shall be submitt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o all the States Parties for acceptance.
 3. An amendment adop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enter into force when two thirds of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have accepted it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4. When amendments enter into force, they shall be binding on those States Parties which have accepted them, other States Parties still being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any earlier amendment which they have accepted.

Article 45

1. This Convention, of which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2.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transmit certified copies of this Convention to all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38.

부록 2

유엔 강제실종협약 개요 및 가입 현황

ENTRY INTO FORCE : 23 December 2010, in accordance with article 39(1) which reads as follows: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depos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twen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REGISTRATION: 23 December 2010, No. 48088.

STATUS: Signatories: 98. Parties: 62.

TEXT: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2716,p. 3; Doc.A/61/448; C.N.737.2008.TREATIES-12 of 2 October 2008 (Proposal of corrections to the original text of the Convention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nd to the Certified True Copies) and C.N.1040.2008.TREATIES-20 of 2 January 2009 (Corrections).

Note: The above Convention was adopted on 20 December 2006 during the sixty-first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by resolution A/RES/61/177. In accordance with its article 38, the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signature by all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The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signature on 6 February 2007 in Paris, France, and thereafter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Participant	Signature		Accession(a), Ratification	
	Date	Year	Date	Year
Albania	6 Feb	2007	8 Nov	2007
Algeria	6 Feb	2007		
Angola	24 Sep	2014		
Argentina	6 Feb	2007	14 Dec	2007

Participant	Signature		Accession(a), Ratification	
Armenia	10 Apr	2007	24 Jan	2011
Austria	6 Feb	2007	7 Jun	2012
Azerbaijan	6 Feb	2007		
Belgium	6 Feb	2007	2 Jun	2011
Belize			14 Aug	2015 a
Benin	19 Mar	2010	2 Nov	2017
Bolivia (Plurinational State of)	6 Feb	2007	17 Dec	2008
Bosnia and Herzegovina	6 Feb	2007	30 Mar	2012
Brazil	6 Feb	2007	29 Nov	2010
Bulgaria	24 Sep	2008		
Burkina Faso	6 Feb	2007	3 Dec	2009
Burundi	6 Feb	2007		
Cabo Verde	6 Feb	2007		
Cambodia			27 Jun	2013 a
Cameroon	6 Feb	2007		
Central African Republic			11 Oct	2016 a
Chad	6 Feb	2007		
Chile	6 Feb	2007	8 Dec	2009
Colombia	27 Sep	2007	11 Jul	2012
Comoros	6 Feb	2007		
Congo	6 Feb	2007		
Costa Rica	6 Feb	2007	16 Feb	2012
Croatia	6 Feb	2007		
Cuba	6 Feb	2007	2 Feb	2009
Cyprus	6 Feb	2007		
Czech Republic	19 Jul	2016	8 Feb	2017
Denmark	25 Sep	2007		
Dominica			13 May	2019 a

Participant	Signature		Accession(a), Ratification	
Dominican Republic	26 Sep	2018		
Ecuador	24 May	2007	20 Oct	2009
Eswatini	25 Sep	2007		
Fiji			19 Aug	2019 a
Finland	6 Feb	2007		
France	6 Feb	2007	23 Sep	2008
Gabon	25 Sep	2007	19 Jan	2011
Gambia	20 Sep	2017	28 Sep	2018
Germany	26 Sep	2007	24 Sep	2009
Ghana	6 Feb	2007		
Greece	1 Oct	2008	9 Jul	2015
Grenada	6 Feb	2007		
Guatemala	6 Feb	2007		
Guinea-Bissau	24 Sep	2013		
Haiti	6 Feb	2007		
Honduras	6 Feb	2007	1 Apr	2008
Iceland	1 Oct	2008		
India	6 Feb	2007		
Indonesia	27 Sep	2010		
Iraq			23 Nov	2010 a
Ireland	29 Mar	2007		
Italy	3 Jul	2007	8 Oct	2015
Japan	6 Feb	2007	23 Jul	2009
Kazakhstan			27 Feb	2009 a
Kenya	6 Feb	2007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29 Sep	2008		
Lebanon	6 Feb	2007		
Lesotho	22 Sep	2010	6 Dec	2013

Participant	Signature		Accession(a), Ratification	
Liechtenstein	1 Oct	2007		
Lithuania	6 Feb	2007	14 Aug	2013
Luxembourg	6 Feb	2007		
Madagascar	6 Feb	2007		
Malawi			14 Jul	2017 a
Maldives	6 Feb	2007		
Mali	6 Feb	2007	1 Jul	2009
Malta	6 Feb	2007	27 Mar	2015
Mauritania	27 Sep	2011	3 Oct	2012
Mexico	6 Feb	2007	18 Mar	2008
Monaco	6 Feb	2007		
Mongolia	6 Feb	2007	12 Feb	2015
Montenegro	6 Feb	2007	20 Sep	2011
Morocco	6 Feb	2007	14 May	2013
Mozambique	24 Dec	2008		
Netherlands ¹⁾	29 Apr	2008	23 Mar	2011
Niger	6 Feb	2007	24 Jul	2015
Nigeria			27 Jul	2009 a
North Macedonia	6 Feb	2007		
Norway	21 Dec	2007	22 Aug	2019
Palau	20 Sep	2011		
Panama	25 Sep	2007	24 Jun	2011
Paraguay	6 Feb	2007	3 Aug	2010
Peru			26 Sep	2012 a
Poland	25 Jun	2013		
Portugal	6 Feb	2007	27 Jan	2014
Republic of Moldova	6 Feb	2007		
Romania	3 Dec	2008		

Participant	Signature		Accession(a), Ratification	
Samoa	6 Feb	2007	27 Nov	2012
Senegal	6 Feb	2007	11 Dec	2008
Serbia	6 Feb	2007	18 May	2011
Seychelles			18 Jan	2017 a
Sierra Leone	6 Feb	2007		
Slovakia	26 Sep	2007	15 Dec	2014
Slovenia	26 Sep	2007		
Spain	27 Sep	2007	24 Sep	2009
Sri Lanka	10 Dec	2015	25 May	2016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29 Mar	2010		
Sweden	6 Feb	2007		
Switzerland	19 Jan	2011	2 Dec	2016
Thailand	9 Jan	2012		
Togo	27 Oct	2010	21 Jul	2014
Tunisia	6 Feb	2007	29 Jun	2011
Uganda	6 Feb	2007		
Ukraine			14 Aug	2015 a
United Republic of Tanzania	29 Sep	2008		
Uruguay	6 Feb	2007	4 Mar	2009
Vanuatu	6 Feb	2007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21 Oct	2008		
Zambia	27 Sep	2010	4 Apr	2011

1) For the European part of the Netherlands and the Caribbean part of the Netherlands (the Islands of Bonaire, Sint Eustatius and Saba).

Subsequently, on 21 December 2017, the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notified the Secretary-General that the Convention will apply to Aruba, with a declaration under articles 31 and 32.(See C.N.783.2017.TREATIES-IV.16 of 21 December 2017.)

Declarations and Reservations

(Unless otherwise indicated, the declarations and reservations were made upon ratification, accession or succession.)

CUBA

The Republic of Cuba hereby declar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2, paragraph 2, that it does not consider itself obliged to refer its disputes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FIJI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Fiji declares that it does not consider itself bound by provisions of Article 42(1).”

GERMANY

Article 16

The prohibition of return shall only apply if the person concerned faces a real risk of being subjected to enforced disappearance.

Regarding Art. 17 (2) (f)

Under German law it is guaranteed that deprivation of liberty is only lawful if it has been ordered by a court or – in exceptional cases – subsequently authorized by a court. Article 104 para. 2 of the Basic Law (Grundgesetz) expressly provides: ‘Only a judge may rule upon the permissibility or continuation of any deprivation of liberty. If such a deprivation is not based on a judicial order, a judicial decision shall be obtained without delay’. Article 104 para. 3 of the Basic Law provides that a person who has been provisionally arrested on suspicion of having committed a criminal offence ‘shall be brought before a judge no later than the day following the arrest’.

In the event that a person is being held arbitrarily in contravention of Article 104 of the Basic Law, anyone can bring about a judicial decision leading to that person’s release by applying to the competent Local Court for his/her immediate release. If the person concerned has been detained beyond the time limit permissible under the Basic Law, the court has to order that person’s release pursuant to section 128 (2), first sentence,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Strafprozessordnung, StPO).

Article 17 para. 3

In the case of an involuntary placement of sick persons by a custodian or a person having power of attorney, the information required under letters (a) to (h) is known to the court which authorizes the placement. The court can ascertain the information required under letters (a) to (h) at any time through the custodian or person having power of attorney; the information is then included in the case-file. This information is also to be regarded as record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7 para. 3.

Regarding Article 18

Under German law, all persons with a legitimate interest are entitled to obtain information from the court files. The restrictions provided for in German law for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the person concerned or for safeguarding the criminal proceedings are permissible pursuant to Article 20 para. 1 of the Convention.

Regarding Article 24 para. 4

It is clarified that the envisaged provision on reparation and compensation does not abrogate the principle of state immunity.”

MOROCCO

Pursuant to 42 (2) of the Convention, the Kingdom of Morocco does not consider itself bound by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nd declares that for any dispute between two or more States to be brought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t is necessary to have, in each case, the agreement of all States parties to the dispute.

NORWAY

“The Kingdom of Norway declares its understanding that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various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pply in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will depend on an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in question in the light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aving regard to general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that apply where several regimes of international law are relevant, such as the principle of harmonisation and the principle of *lex specialis*.

To the extent that Article 17 (2) of the Convention may be interpreted as requiring each State Party to establish ‘in its legislation’ conditions for and guarantees related to

deprivation of liberty that apply in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the Kingdom of Norway reserves the right not to apply this provision in such situations. Deprivation of liberty during armed conflict is not currently regulated in formal Norwegian law. In Norway, the rules concerning deprivation of liberty during armed conflict are set out in the Norwegian Armed Forces' Manual of the Law of Armed Conflict and in the rules adopted for each specific operation, including the rules of engagement.”

“The Kingdom of Norway declares its understanding that Article 20 (1) of the Convention, which permits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information referred to in Article 18 on an exceptional basis, where ‘strictly necessary’ and ‘if the transmission of the information would adversely affect the privacy’ of the person deprived of liberty, allows for weight to be given to an assessment by the person concerned of whether these conditions are met.

This applies provided that the information, viewed objectively, is of a sensitive personal nature, that the person concerned is under the protection of the law and that the deprivation of liberty is subject to judicial control.

Thus, it is the understanding of the Kingdom of Norway that,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access to information may be denied if the person deprived of liberty does not consent to the disclosure of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on grounds of privacy.”

UKRAINE

“Regarding Articles 13 and 14 of the Convention, Ukraine empowers the Prosecutor General’s Office of Ukraine (concerning request during the pre-trial investigation) and Ministry of Justice of Ukraine (concerning request during the court proceedings or execution of judgments) to consider requests according to Articles 10–14 of Convention”.

[...]

Regarding Article 42 of the Convention, Ukraine does not consider itself bound by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42 concerning additional procedures of settlement of disputes by arbitration or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Reservation made upon signature:

The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in accordance with article 42, paragraph 2,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hereby formulates a specific reservation concern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at article. Therefore, it does not consider itself to be obliged to resort to arbitration as a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nor does it recognize the compulsory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Declarations recognizing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under articles 31 and 32

(Unless otherwise indicated, the declarations were made upon ratification, accession or succession.)

ALBANIA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the Republic of Albania declares that it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from or on behalf of individuals subject to its jurisdiction claiming to be victims of a violation of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by Albanian Stat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the Republic of Albania declares that it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in which a State Party claims that another State Party is not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ARGENTINA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31, paragraph 1 ...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the Argentine Republic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from or on behalf of individuals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Argentine Republic claiming to be victims of a violation by the State of any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 article[s] 32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the Argentine Republic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in which a State Party claims that another State Party is not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AUSTRIA

Pursuant to Article 32 of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Austria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in which a State Party claims that another State Party is not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Pursuant to Article 31 of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Austria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from or on behalf of individuals subject to its jurisdiction claiming to be victims of a violation of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by Austria.

BELGIUM

Article 32:

The Kingdom of Belgium declar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 of the Convention, that it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in which a State Party claims that another State Party is not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Article 31:

The Kingdom of Belgium declares that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of the convention, [Belgium]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from or on behalf of individuals subject to its jurisdiction claiming to be victims of a violation of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by the Kingdom of Belgium.

BOSNIA AND HERZEGOVINA

“Bosnia and Herzegovina hereby declar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adopted in New York, December 20, 2006, that it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in which

a State Party claims that another State Party is not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Bosnia and Herzegovina hereby declares that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adopted in New York, December 20, 2006, Bosnia and Herzegovina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from or on behalf of individuals subject to its jurisdiction claiming to be victims of a violation of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by Bosnia and Herzegovina.”

CHILE

The Republic of Chile hereby declar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of this Convention, that it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from or on behalf of individuals subject to its jurisdiction claiming to be victims of a violation by this State Party of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Republic of Chile hereby declar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 of this Convention, that it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in which a State Party claims that another State Party is not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CZECH REPUBLIC

… pursuant to Article 31 (1)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the Czech Republic declares that it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from or on behalf of individuals subject to its jurisdiction claiming to be victims of a violation by the Czech Republic of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 pursuant to Article 32 of the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the Czech Republic declares that it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in which a State Party claims that another State Party is not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ECUADO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31 (1)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the Republic of Ecuador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from or on behalf of individuals subject to its jurisdiction claiming to be victims of violations of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by this State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32 of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the Republic of Ecuador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in which a State Party claims that another State Party is not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FRANCE

...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31, [France]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from or on behalf of individuals subject to its jurisdiction claiming to be victims of a violation of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by France.

...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 [France]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in which a State Party claims that another State Party is not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GERMANY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CED) of 20 December 2006,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declares that it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from or on behalf of individuals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laiming to be victims of a violation of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by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CED) of 20 December 2006,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declares that it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in which a State Party claims that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s not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JAPA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 of the Convention, the Government of Japan declares that it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in which a State Party claims that another State Party is not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LITHUANIA

Article 31

“...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of the Convention, the Seimas of the Republic of Lithuania declares that the Republic of Lithuania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from or on behalf of individuals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Lithuania claiming to be victims of a violation by the Republic of Lithuania of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ticle 32

“...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 of the Convention, the Seimas of the Republic of Lithuania declares that the Republic of Lithuania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in which a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claims that the Republic of Lithuania is not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MALI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ali declares that it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to receive communications from individuals or any other State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31 and 32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against Enforced Disappearance, adopted on December 20, 2006.

MONTENEGRO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adopted in New York, December 20, 2006, the Government of Montenegro declares that Montenegro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from or on behalf of individuals subject to its jurisdiction claiming to be victims of a violation by Montenegro of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adopted in New York, 20 December 2006, the Government of Montenegro declares that Montenegro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in which a State Party claims that another State Party is not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NETHERLAN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for the European part of the Netherlands and the Caribbean part of the Netherlands (the islands of Bonaire, Sint Eustatius and Saba), declares that it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in which a State Party claims that another State Party is not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for the European part of the Netherlands and the Caribbean part of the Netherlands (the islands of Bonaire, Sint Eustatius and Saba), declares that it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from or on behalf of individuals subject to its jurisdiction claiming to be victims of a violation by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of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PERU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s, the Republic of Peru declares that it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from or on behalf of individuals subject to its jurisdiction, claiming to be victims of a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by the Republic of Peru.

PORTUGAL

“The Portuguese Republic declares that it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in accordance and for the purposes of Article 31, paragraph 1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adopted in New York, on the Twentieth of December of two thousand and six.”

“The Portuguese Republic declares that it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in accordance and for the purposes of Article 32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adopted in New York, on the Twentieth of December of two thousand and six.”

SERBIA

“The Republic of Serbia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from or on behalf of individuals subject to its jurisdiction claiming to be victims of a violation by the Republic of Serbia of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Republic of Serbia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in which a State Party claims that another State Party is not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SLOVAKIA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 of the Convention, the Slovak Republic declares that it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in which a State Party claims that the Slovak Republic is not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of the Convention, the Slovak Republic declares that it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from or on behalf of individuals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Slovak Republic claiming to be victims of a violation of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by the Slovak Republic.”

SPAIN

Declarations under articles 31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the Kingdom of Spain declares that it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from or on behalf of individuals subject to its jurisdiction, claiming to be victims of violations by Spain of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Declarations under articles 32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the Kingdom of Spain declares that it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in which a State party claims that another State party is not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SRI LANKA

“...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wishes to declare as per Article 32 of the Convention that it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in which a State Party claims that another State Party is not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SWITZERLA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of the Convention, Switzerland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from or on behalf of individuals subject to its jurisdiction claiming to be victims of a violation of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by Switzerla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 of the Convention, Switzerland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in which a State Party claims that another State Party is not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UKRAINE

Article 31

“Regarding Article 31 of the Convention, Ukraine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from or on behalf of individuals subject to its jurisdiction claiming to be victims of violation of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by Ukraine.”

Article 32

“Regarding Article 32 of the Convention, Ukraine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in which a State Party claims that another State Party is not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URUGUAY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paragraph 1,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the Eastern Republic of Uruguay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submitted by or on behalf of individuals subject to its jurisdiction claiming to be victims of a violation by that State of the provisions of that Convention.

...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the Eastern Republic of Uruguay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in which a State party claims that the Uruguayan State is not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that Convention.

UN 강제실종협약 가입 방안 모색 전문가 세미나

| 인 쇄 | 2019년 12월
| 발 행 | 2019년 12월
| 발행인 | 최 영 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 주 소 | (04551)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 전 화 | (02) 2125-9887
| F A X | (02) 2125-0919
| 홈페이지 | www.humanrights.go.kr
| 인 쇄 | (주)늘품플러스 (070-7090-1177)

| ISBN | 978-89-6114-722-4 9336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 (무단
변경, 복제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UN 강제실종협약 가입 방안 모색 전문가 세미나